간행물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098-01

##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문화분야 법제 연구

2021



## 목차

제1장 서돈	1
I. 연구배경 및 목적 ·····	1
Ⅱ. 연구의 범위	1
1. 문화권 등 문화기본법상 주요 개념의 재정립	1
2.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	2
3. 문화보장과 문화서비스	
4. 문화재정 기반확대와 공제사업	2
4. 인적·물적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	
Ⅲ.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2. 전문가 의견 수렴	
3. 입법학적 검토를 통한 법 개정안 도출	3
제2장 현행 문화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I.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	
1.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 이유	
2.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	
Ⅱ. 국회의 문화기본법 개정 논의 경과	
1. 제19대 국회 문화기본법 개정 논의	
2. 제20대 국회 문화기본법 개정 논의	
3. 제21대 국회 문화기본법 개정 논의	
4. 평가 및 소결	
Ⅲ. 문화기본법의 한계	
1. 현행 문화기본법 체계	
2. 현행 문화기본법 체계의 문제점	
3. 문화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제고 방안 : 법체계의 측면	
4. 문화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제고 방안 : 법이념의 측면	19
게이기 프로그램의 게기 되지	0.0
제3장 문화기본법 개정 방안	
I. 문화권 개념의 재정립······	
1. 문화권 개념의 발전	
2. 헌법과 문화권	
3. 문화권의 내용	
4. 문화권의 재구성	
Ⅱ. 문화보장	
1. 문화보장의 필요성	36

2. 문화보장의 정의와 범위	38
Ⅲ. 기본법 체계 정비와 통합 문화행정 기반 구축	45
1. 기본법의 이해와 문화기본법체제의 문제	45
2. 문화기본법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46
3. 문화행정의 통합 체계 구축	66
Ⅳ. 재정기반 및 공제사업	69
1.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69
2. 문화자산특별회계	
3. 공제사업	70
제4장 문화기본법 전부개정안	79
I. 전부개정안의 방향 및 주요 내용····································	
1. 전부개정안의 방향····································	
2. 전부개정안의 구성····································	
Ⅱ.「문화기본법」전부개정안 해설······	
1. 목적······	
2. 기본이념······	
3. 정의	
4. 국민의 권리 등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 국민의 역할 등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89
8. 문화의 가치 확산의 원칙	
9. 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10. 문화진흥 관련계획의 수립····	
1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12. 국회 보고	
13. 지역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108
14. 국가문화전략회의의 설치	113
15. 지역문화전략회의의 설치	118
16. 문화진흥 재정추계	121
17. 문화역량	122
18. 문화교류····	125
19. 언어문화진흥	
20. 전통문화와 문화유산	129
21.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	
22. 문화보장의 원칙	
23. 문화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	
24. 문화공공부조사업	
25. 문화서비스	
26. 문화이용권····	143

27. 민간의 참여와 협력146
28.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29. 국립문화인재개발원······150
30.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154
3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156
32. 문화의 달·날·····159
33.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161
34. 문화경관의 연계관리
35. 문화·여가시설의 조성·운영······165
36. 문화정보화 시책
37.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171
38.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174
39. 문화자산특별회계의 설치·운영······176
40. 문화·여가시설 안전공제사업······180
41. 문화관광공제
42. 공제의 가입
43. 문화영향평가의 실시187
44.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193
45.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의 지정 등196
46.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199
47. 부칙······ 202
Ⅲ.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괄 개정법204
1. 도입 취지······204
2. 주요 내용204
3. 법안의 예시204
제5장 문화기본법 전부개정안 신구대조표 210

## 표 및 그림 목차

<班 3-1>	국제법상의 문화권	·23
< 丑 3-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체계	•47
<丑 3-3>	범부처 차원의 문화정책관련 법률	•51
<丑 3-4>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문화정책 관련 행정계획	56
<丑 3-5>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문화정책 관련 행정계획 중 상위 계획	59
<丑 3-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문화정책 관련 지방행정계획	60
<丑 3-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설립 위원회	·62
	] 문화진흥 종합계획 구조	
[그림 4-2]	] 국가문화전략회의 구조]	15

제1장 서론

## 제 1 장 서론

## I. 연구배경 및 목적

- 2014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으나 문화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기 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내용이 소략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정부시책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사회정책으로서 문화정책을 새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나 문화 분야의 법제는 체계적 구심점이 없어 문화예술·체육·관광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문화기본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체계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
- 문화 분야의 법령체계정비를 통해 문화가치가 범정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문화권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문화서비스와 문화안전망을 개념을 구체화하여 범정부적 관점에서 문화 분야의 계획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은 67개(문화재청 소관 법률 12건 별도) 중에서 43개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정위원회가 27개로 세분화되어 있음
- 문화기본법을 정점으로 하여 계획의 수립을 일원화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 법정위원회를 포괄하는 문화기본법 상의 법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정위원 회 체계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과 문화재청 소관 법률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하여 문화 정책 분야별로 입법정책의 방향을 문화기본법에 규정하여 문화기본법과 전체 소 관법률 간의 기본법-개별법 체계를 재정립하여 문화정책의 수요자가 문화 분야 의 법정책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문화정책의 제도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Ⅱ. 연구의 범위

## 1. 문화권 등 문화기본법상 주요 개념의 재정립

- 문화권 개념의 재구성
- 문화보장 및 문화안전망 개념의 도입
- 문화정책의 범위 및 문화역량 개념의 구체화
- 문화기본법상 기본이념과 문화의 가치 확산의 원칙의 재구성

## 2.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률의 체계정비, 기본계획 체계화, 통합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방안
-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 영역을 범부처로 확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 분야의 법령이 문화기본법과의 기본법-개별법 관계가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 도록 문화정책 법체계 정비
-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등의 중복·유사계획 수립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별도 수립이 비효율적인 기본계획은 상위계획 수립으로 의제하거나 관련 계획 간의 병합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체계 정비
- 각 분야 정책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정책총괄위원회를 신설하고 상위 정책 심의·조정 권한 부여
-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평가수행 및 평가결과 환류 의무화

## 3. 문화보장과 문화서비스

- 문화권 구체화 및 문화보장 개념 도입
-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보장 개념을 체계화하고 문화안전망을 규정하며 문화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이외에 사회권적 기본적 성격의 문화권체계화
- 문화보장의 기준과 단계적 확대를 문화서비스 제도 도입 검토
- 문화공공사업 및 문화이용권 제도 체계화 검토

#### 4. 문화재정 기반확대와 공제사업

- 문화·체육·관광 분야 별로 분리되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힘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며 기존의 6개 기금 관리체계 를 효율화 검토
- 체계적인 현황파악·가치산정이 될 수 있도록 국유 문화재, 국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화자산특별회계와 가치평가 및 관리시스템 도입을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소득이나 고용이 불안정한 프리랜서가 주를 이루는 문화 분야 종사자의 사회보 장을 위한 공제회를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종 사자를 통합하여 문화분야 공제회 설립 검토

## 4. 인적·물적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

- 문화 분야 일자리 확대를 업종 분류, 인력양성 등의 제도적 기반 구축
- 분산되거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문화·여가시설·자산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근 거 규정 마련하여 효율적 관리체계 도입
- 별도 국립 소속기관을 설립하기 어려워 개별적으로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중·소 규모 국유 문화·여가시설을 관장하는 체계 검토
-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여가시설이 점 단위 개별적 조성에서 지자 체별 면 단위 종합적 조성이 가능하도록 문화·여가시설 집적단지 제도화 검토

## Ⅲ. 연구 방법

## 1. 문헌연구

- 문화기본법 제정 배경 및 경과에 관한 조사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및 체계 조사
- 문화정책 관련 문헌 조사

## 2. 전문가 의견 수렴

- 문제점 파악과 적정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문화정책 및 법 정책 관련 전문가 의 의견수렴
-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및 자문의견 반영

## 3. 입법학적 검토를 통한 법 개정안 도출

- 입법학 및 법체계 정합성 검토를 통한 문화기본법 전부개정안의 도출
- 법안의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유사입법례 등 해설
- 문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일괄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안의 도출

# 제2장 현행 문화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 제 2 장 현행 문화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 I.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

#### 1.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 이유

- 현행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 주로 문화예술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으며,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 화적 권리에 대하여는 소홀했음
- 이에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를 해소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

## 2.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

#### (1) 제정 당시 주요 내용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역으로서의 문화, 문화 가치의 사회 영역 전반에의 확산, 문화 표현과 활동의 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명시함(제2조).
- 문화 개념을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폭넓게 규정함(제3조).
-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에 대한 근거 마련함(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시행,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제5조).
-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가치판단 준거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의 다양성·자율성· 창조성의 확산 등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7조).
- 문화진흥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8조).
- 문화유산, 국어,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복지, 여가문화 등에 관한 문화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제9조).
- 문화 인력 양성,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개발, 문화의 달, 재정 지원 등 문화 진흥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2) 2016년 개정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3) 2017년 개정

○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 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4) 2019년 개정

○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 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하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Ⅱ. 국회의 문화기본법 개정 논의 경과

## 1. 제19대 국회 문화기본법 개정 논의

- (1) 안흥준 의원안(의안번호: 1916737)
- 제안일자: 2015-09-04
- 발의자: 안홍준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의식의 고도화 및 높아지고 있는 품격 있는 삶의 욕구에 대한 대응과, 사회통합과 창조경제 등 당면한 국정과제의 달성을 위해 문화와 관광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화·관광 정책 연구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연구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와 관광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므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관광 산업의 진흥 기타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연구·조사·

개발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유 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통계·평가· 교육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의결 결과: 대안반영폐기

#### (2) 신성범 의원안(의안번호: 1917514)

○ 제안일자: 2015-11-02

○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 국민의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더불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및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 문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문 제로 제기되고 있음.
  - 한 국가의 문화라는 것은 1년에 특정 월 또는 특정 일 만을 지정하여 국민에 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개개 인의 행복 추구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깊게 뿌리내리는 경우에 비로소 문화 국가로서 품격을 갖출 수 있게 됨.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가격 할인 또는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없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 문화·여가시설 및 기업, 학교 등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지자체, 기업 및 학교 등 전국적확산을 유도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2조제3항 개정).
- 의결 결과: 대안반영폐기

#### (3) 위원회 대안(의안번호: 1918733)

○ 제안일자: 1918733

○ 발의자: 문광위원회

○ 주요 내용

- 안홍준 의원안과 신상범 의원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함께 심사·의결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마련함.

- 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법에 명시
- 나.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 의결 결과: 원안가결

#### 2. 제20대 국회 문화기본법 개정 논의

- (1) 유은혜 의원안(의안번호: 2005590)
- 제안일자: 2017-02-13
- 발의자: 유은혜의원 등 24인
- 주요 내용
  - 현행법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 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
- 의결 결과: 원안 가결
- (2) 설훈 의원안(의안번호: 2009010)
- 제안일자: 2017-09-01
- 발의자: 설훈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 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를 바탕으로 적실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

획의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환류절차(Feed-back) 등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문화 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5항 및 제8조의2 신설).
- 의결 결과: 임기만료폐기

#### (3) 유은혜 의원안(의안번호: 2012826)

○ 제안일자: 유은혜의원 등 13인

○ 발의자: 2018-04-02

- 주요 내용
  - 현행법은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문화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법에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남북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남북 간 문화적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 문화예술 교류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 문화예술의 교류 활성 화를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 도록 함으로써 남북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1 호 신설 등).
- 의결 결과: 임기만료폐기

#### (4) 송옥주 의원안(의안번호: 2014021)

○ 제안일자: 2018-06-26

○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 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 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 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 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 의결 결과: 임기만료폐기

#### (5) 안민석 의원안(의안번호: 2016051)

- 제안일자: 2018-10-23
- 발의자: 안민석의원 등 11인
- 주요 내용
  - 201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그런데,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사항이 아니라 선언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침에 따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삭제 및 제9조의2 신설).
- 의결 결과: 임기만료폐기

#### (6) 안민석 의원안(의안번호: 2017196)

- 제안일자: 2018-12-06
- 발의자: 안민석의원 등 12인
- 주요 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문화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

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 써 문화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 의결 결과: 수정 가결

#### (7) 황주홍 의원안(의안번호: 2017254)

○ 제안일자: 2018-12-06

○ 발의자: 황주홍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 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 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을 설립하여 유리 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에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 의결 결과: 임기만료폐기

#### (8) 이찬열 의원안(의안번호: 2018640)

○ 제안일자: 2019-02-15

○ 발의자: 이찬열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2016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제도의 안 정적인 수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 의결 결과: 임기만료폐기

#### (9) 신동근 의원안(의안번호: 2022274)

○ 제안일자: 2019-08-30

○ 발의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 주요 내용
  - 법령에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2개년 간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음.
  - 어려운 한자어인 "향유"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누림"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등).
- 의결 결과: 임기만료폐기

#### (10) 안민석 의원안(의안번호: 2023351)

○ 제안일자: 2019-10-31

○ 발의자: 안민석의원 등 11인

○ 주요 내용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사회와의 협치가 중요시되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의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199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행정뿐 아니라 행정 행

위 일반에서 시민참여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바, 시민참여를 위한 문화행정의 일반 원칙인 문화행정의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문화행정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문 화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정책의 방향설정,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문화정책을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 런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 기 위해 문화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참여 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나. 문화정책 관련 협치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의결 결과: 임기만료폐기

#### (11) 우상호 의원안(의안번호: 2024253)

○ 제안일자: 2019-12-11

○ 발의자: 우상호의원 등 11인

- 주요 내용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그 법적 성격은 법정 법인에 해당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 하지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는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관광 분야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 의결 결과: 임기만료폐기

## 3. 제21대 국회 문화기본법 개정 논의

(1) 안민석 의원안(의안번호: 2100718)

○ 제안일자: 2019-12-11

○ 발의자: 안민석의원 등 27인

- 주요 내용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의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문화행정의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함. 또한,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화 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함.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관 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문화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정책의 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나. 문화정책 관련 협치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문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문화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의결 결과: 심사 중

#### (2) 이병훈 의원안(의안번호: 2105462)

○ 제안일자: 2020-11-18

○ 발의자: 이병훈의원 등 12인

○ 주요 내용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에 의해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 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 현행법이 부여한 본연의 업무 수행 및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 한류의 국제적 확 산, 연구개발사업관리 등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 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

에서 지원뿐 아니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정책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 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

○ 의결 결과: 심사 중

#### (3) 유정주 의원안(의안번호: 2106044)

○ 제안일자: 2020-12-02

○ 발의자: 유정주의원 등 13인

- 주요 내용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함)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도 평가의 결과가 계획 및 정책을 구속하지 못하고 권고적인 성격에 그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문화영향평가 평가수 행기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계획·정책에 반영하여 반영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반영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계획·정책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문화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 의결 결과: 심사 중

#### (4) 안민석 의원안(의안번호: 2106799)

○ 제안일자: 2020-12-21

○ 발의자: 안민석의원 등11인

- 주요 내용
  - 2014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시범평가를 거쳐 2016년도부

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그런데, 문화영향평가제도가 예산 편성이나 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사항이 아니라 선언적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개별사업의 예산과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그침에 따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 평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삭제 및 제9조의2 신설).
- 의결 결과: 심사 중

## 4. 평가 및 소결

- 2013. 12. 30.에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에 대한 규정 이 필요성으로 제정되었으며, 문화정책의 기본원칙과 문화진흥기본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함
- 제정 이후 세 차례의 걸친 개정을 통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근거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모든 국민이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으며 문화정책위원회와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개정안이 새로 열린 국회에 발의됨
- 문화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문화권과 국가의 책무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문화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고 문화권의 수준도 자유권·평등권에 머물고 있음

## Ⅲ. 문화기본법의 한계

## 1. 현행 문화기본법 체계

- (1) 문화'기본법'으로 제정
- 문화 분야의 기본법 위상으로 법 제정
- 문화법체계의 기본이념과 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규정
- (2) 문화의 정의와 문화권의 틀을 제시

- 문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특성의 총체 최광의의 정의 범주
- 문화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화창조, 활동참여, 향유 권리
  - 자유권과 평등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맥락에서 규정

#### (3) 문화진흥기본계획

- 5년 주기로 수립되는 행정계획
- 문화정책의 범위

#### (4) 문화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 2016년 5월 개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설립근거 규정
- 2017년 11월 개정: 차별금지 대상에 "정치적 견해" 추가
- 2019년 11월 개정: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국회보고

#### 2. 현행 문화기본법 체계의 문제점

#### (1) 문화정책 범주의 불명황성

- 문화의 정의는 최광의로 규정되었으나 문화정책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문화진흥기본계획의 포함사항으로만 규정
- 문화정책의 범주가 협의의 문화 분야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항을 포괄하는 지 범부처의 문화정책을 포함하는지가 모호함

#### (2) 문화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적 성격 무시

- 문화권에 대한 최초의 규정이기는 하나 자유권적 기본권의 맥락에서만 규정
- 국민의 기본권의 축이 사회권적 기본권 중심으로 옮겨가는 현대국가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함

#### (3) 기본법과 개별법 간의 체계 부정합성

- 기본법이라는 법명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이 갖추어야 할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문화 분야의 최상위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함
- 기본법적 성격이 약하여 문화 분야의 여러 법률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위상에 머물러 있는 문제

#### (4) 문화진흥계획의 위상 저하

-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문화진흥계획이 규정되어 있으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이 취약하여 문화진흥기본계획 조차도 여러 행정계획 중의 하나인 위상에 불과
- 문화진흥계획이 문화 분야의 다른 행정계획과의 관계가 불명확하여 최상위 행정 계획 이라기보다 또 하나의 행정계획으로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비판

#### (5) 문화정책 추진체계의 부재

- 문화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추진할 추진체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화진흥기본계획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
- 추진체계 또는 행정계획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부재로 인해 문화 진흥기본계획의 민간협력 체계가 취약해 지는 문제

#### (6) 문화기본법의 위상 하락

- 문화와 문화권을 규정하며 기본이념과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도 기본법으로서 체계정합성이 취약하여 문화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
- 현실적으로 문화 분야의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에 문화기본법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문화기본법의 개정 사항조차도 다른 문화법제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기본법-개별법 체계에서 문화법제의 개별법을 이끄는 상위기본법이 아니라 문화 분야의 다른 법률들과 병렬적인 위상을 가질 뿐이라는 비판

## 3. 문화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제고 방안 : 법체계의 측면

#### (1) 문화정책의 총괄적 방향 제시

- 문화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총괄적 방향이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 총칙 장을 별도로 설정하고 기본이념을 상세하게 제시하며 범부처 문화정책의 지침이 되는 문화의 가치 확산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

#### (2) 문화정책의 대상 명시

- 문화행정의 갈래를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과 문화체 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정책으로 구분하고 문화정책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 정할 필요
-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과 문화정책이 문화진흥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 (3) 문화진흥계획의 위상 확보

- 문화진흥계획이 여러 행정계획 중의 하나가 아니라 문화 분야의 최상위 행정계 획으로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행정계획과의 관계를 명시할 필요
- 다른 문화관련 행정계획이 문화진흥계획에 따라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문화진흥 계획과 다른 문화관련 행정계획의 수립주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정하 여 문화진흥계획에 따른 문화관련 행정계획의 수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4) 문화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규정

-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과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총괄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행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함
- 총괄조정위원회는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위원들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5) 기본법에 따른 개별법의 입법방향 제시

-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문화정책의 각 영역에 따른 개별법의 입법방 향을 제시할 필요
- 문화정책의 각 영역의 주요 법률들의 입법의무를 문화기본법에 명시

#### (6) 개별법에서 기본법과의 관계 명시

- 문화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문화정책 각 영역의 개별법에서 문화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입법의무에 따라 입법되었음을 목적 조항에 명시
- 개별법과 기본법과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개별법의 행정계획에 문화기본 법의 문화진흥계획에 따라 수립됨을 명시

#### 4. 문화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제고 방안 : 법이념의 측면

#### (1) 사회권적 기본권 성격의 문화권으로 확장

- 자유권적 기본권을 기반의 문화권을 사회권적 기본권 성격의 문화권으로 확장하여 문화법제의 새로운 이념적 방향 제시
-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문화법제의 제·개정 방향 제시

#### (2) 문화보장 및 문화안전망 규정을 통한 새로운 문화권의 구체화

- 사회권적 기본권 성격의 문화권을 구체화하는 문화보장 및 문화안전망 규정
- 문화보장 및 문화안전망을 구성하는 문화공공부조와 문화서비스, 문화이용권 등을 규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전환

#### (3) 인적·물적 문화자원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방안 제시

- 인적 문화자원인 문화·체육·관광인력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방안 제시로 문화체육 관광법제의 통합적 접근 근거 마련
- 물적 문화자원인 문화·여가시설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방안 제시로 문화체육관광 법제의 통합적 접근 근거 마련

#### (4) 문화재정의 확대와 문화체육관광 공제사업 규정

- 문화체육관광법제의 기금의 통합운영방안 제시로 문화제정의 통합 운영 기반 확보하며 문화자산특별회계의 규정으로 문화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명확히 하여 문화재정의 발전기반 마련
- 문화체육관광인의 공제사업과 문화·여가시설의 안전공제사업을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인의 복지확대와 재정기반 확대

제3장 문화기본법 개정 방안

## 제 3 장 문화기본법 개정 방안

## I. 문화권 개념의 재정립

## 1. 문화권 개념의 발전

#### (1) 문화권 용어의 등장

- 문화적 권리는 UN의 「세계인권선언」(1948)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음
  - 제22조에서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함
  - 제24조에서 "모든 인간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함
  - 제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
  -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문화적 권리, 노동과 구별되는 휴식과 여가의 권리, 문화 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들을 선언함
  - 인간은 물질적 생활 이외에 문화적 생활을 향유해야 할 존재임을 선언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1966)에서 구체화되었음
  -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 이 국제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문화적 권리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7월부터 적용되었음
- 이 국제규약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당사국들은 삶의 질 측면에서 국민에 게 문화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 1966년 유네스코 총회 「국제 문화협력에 관한 원칙 선언」에서 '문화권리'를 명 시
- 1968년 '인권으로서 문화권'에 관한 전문가 회의

#### (2) 국제법에서 문화권의 발전1)

〈표 3-1〉 국제법상의 문화권

규약	내용
세계문화보고서	국가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의 신 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해야 한다.
인종과 인종편견에 관한 선언(1978)	제1조: 출신에 근거를 둔 정체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인간은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살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문화, 환경, 역사적 다양성에 기초한 차이가 존재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고, 문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 및 기여에 관한 권고(1976)	서문: 최대한 많은 사람과 단체가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진 시키는데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문화 가치 형성에 일반 대중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일반 대중은 문화 혜택을 향수 할 수 있고 나아가 문화 발전 과정에서 문화생활 전 분야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멕시코시티 문화정책 선언(1982)	제1원칙: 모든 문화는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의 실제를 담고 있다. 그 이유는 각 민족의 전통과 표현 체계로 이루어진 문화는 세계에서 그들 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sup>1)</sup> 이영욱, "문화헌장 제정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록, 2005; 정광렬 외, "문화국가를 위한 헌법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42쪽.

#### (3) 주요 국가 헌법에서 문화권의 명시 사례

####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 1999년 유럽이사회에서 헌장 기초단을 구성하여 초안을 마련한 후 2000년 12월 7일 니스에서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을 채택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전문 "유럽연합은 유럽 각국의 문화와 전통의 다양성, 각 회원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국·광역·지역 차원의 국가권력 조직을 존중하여 전술한 공동가치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균형발전을 촉 진하고 개인, 재화, 용역,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기업설립의 자유를 보장하 고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은 없음
- 제22조 문화, 종교 및 언어의 다양성 유럽연합은 문화, 종교 및 언어의 다양 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5조 유럽연합은 존엄성 있는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2조는 존중의무 형식, 제25조는 노인의 권리가 본질

#### ○ 포르투갈 헌법 제78조

-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적 창작활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문화재를 보존·유지할 의무를 진다.)"

#### ○ 슬로바키아 :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국민의 의무 규정

- 헌법 제44조 ① 국민은 안락한 환경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은 환경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③ 누구라도 환경, 천연자원, 문화유산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위태롭게 하거나 손상시킬 수 없다.

#### ○ 폴란드

- 헌법 제35조 제2항 "소수민족과 소수인종은 교육적·문화적 기구, 즉 종교적 정체성을 보호할 목적을 가진 기구를 설립할 권리 및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과 연관된 문제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수민족과 소수인종의 고유문화 유지 및 발전시킬 자유와 더불어, 문화적 정 체성에 대한 문제 결정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 ○ 일본

- 문화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본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문화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문화권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 ○ 대만

- 1997년 헌법 개정에서 대만을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고 토착민의 권리를 인정 하였다. 제8장 제5절 제158조 제169조 선주민 문화

#### ○ 필리핀

- 문화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제14장 교육, 과학과 기술, 예술, 문화

#### 예술과 문화

- 제14조 국가는 자유로운 예술적 및 지적 표현의 분위기 속에서 다양함 속의 통일성 원칙에 기초하여 필리핀 국가문화의 보존, 풍요 및 역동적 진화를 증진시킨다.
- 제15조 예술과 문자는 국가의 지원을 향유한다. 국가는 국가의 역사적 및 문화적 유산과 자원 그리고 예술적 창조물을 보존, 추구, 대중화한다.
- 제16조 모든 국가의 예술적 및 역사적 부는 국가의 문화적 보물을 구성하며 그 처분을 규제할 수 있는 국가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한다.
- 제17조 국가는 토착 문화 공동체가 자신의 문화, 전통 및 제도를 보존, 발전시킬 권리를 인정, 존중 및 보호한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국가계획 및 정책 수립 시 고려한 다.
- 제18조 ① 국가는 교육시스템, 공립 또는 사립 문화단체, 장학금, 지원금 및 기타 인센티브 그리고 지역사회 문화센터와 그 밖의 공공장소를 통해 문화적 기회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한다. ② 국가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한 다.

#### ○ 태국 헌법 제47조

- 태국 헌법 제66조 "공동체, 지역공동체 또는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로서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관습, 지역적 지식, 예술, 그리고 지역 및 국가의 훌륭한 문 화를 보호하고 부흥시키며, 또한 천연자원의 관리, 유지와 활용, 조화롭고 지 속가능한 방식의 환경과 생물학적 다양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3조 국민들의 의무 중에 국가의 예술문화 및 지역적 지식의 보호·계승 의 무<sup>2)</sup>
- 제4장 종교, 사회, 공중 보건, 교육 및 문화정책
- 제80조(6) 국가 문화정책 의무<sup>3)</sup>
- 제289조 지방정부<sup>4)</sup>

<sup>2)</sup> Section 73. Every person shall have a duty to serve in armed forces, render assistance in providing public calamity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pay taxes, render assistance to the official service, receive education and training, protect, preserve and pass on the national arts and culture and local wisdom and conserve natural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as provided by law.

<sup>3)</sup> Section 80. The State shall act in compliance with the social, public health, education and culture policies as follows:

<sup>(6)</sup> encouraging and instilling the right awareness of national unity and learning, and instilling and making known of arts, tradition and culture of the nation as well as good value and local wisdom.

<sup>4)</sup> Section 289. A local government organisation has the duty to conserve local arts, custom, wisdom and good culture of locality.

A local government organisation has the right to provide education and professional training in accordance with the suitability to and the need of that locality and participate

#### (4) 소결

- 문화권은 휴식과 여가를 전제해야 하고 물질적인 측면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넘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이해해야 함
- 비교헌법적으로 볼 때, 헌법에 문화권이 명시되는 경향이 있는 바, 환경권과 마 찬가지로 제3세대 인권으로서 헌법으로 편입되고 있다고 할 것임
-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문화영역에서의 평등(차별금지), 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으로 규정하다가, 현대에 이르러 문화 향유, 문화 참여, 문화다양성 등으로 확대하여 보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문화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명시
- 문화기본법상 문화권은 국제법에서 논의된 문화권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으나,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나 문화복지, 문화적 다양성, 발전권 등에 관해서는 적 극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2015년 「국민여가 활성화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한 바 있음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 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함
  - "여가"란 자유 시간 동안 행하는 강제되지 아니한 활동을 말하며 문화예술 활동, 콘텐츠 관련 활동, 국민관광, 생활체육 등의 활동을 포함함

## 2. 헌법과 문화권

#### (1) 한국 헌법과 문화 관련 조항

- 제헌헌법에서부터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등을 규정
- 제5차 개헌에서 평등권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문화적'을 추가

in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by State with regard to the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education standard and system.

In providing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paragraph two, the local government organisation shall also have regard to the conservation of local arts, custom, wisdom and good culture.

- 헌법 본문에서 '문화', '전통문화', '민족문화'가 본격적으로 규정한 것은 1980년 헌법 제8조 및 제44조
  - 제8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이 두 규정은 현행헌법 제9조와 제69조에 존속
- 헌법학계에서 이를 두고 국가목표조항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의 견해들은 헌법상 국가의 기본원리의 하나인 문화국가원리로 설명
  - 다만, 현행 헌법규정은 문화국가원리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전통문화 · 민족문화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헌법개정논의에서는 민족문화를 전통문화로 통일하고, 문화적 다양 성 등을 추가하는 논의가 전개되기도 한 바 있음
-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개정안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의 창조·진흥 및 문화적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5항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국회 개헌 논의에서도 문화국가원리에 전통문화의 보호 이외에 문화의 창조 와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였으며,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음
-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제안의 헌법개정안
  -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 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제36조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대통령 제안의 헌법개정안에서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강조, 민족문화를 전통문화로 통일한 점,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적 생활에 참여권을 규정한 점이 특징임

#### (2) 문화국가 원리의 주요 내용

- 문화국가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됨<sup>5)</sup>
  - "문화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국가가 적극적인 문화형성의 과제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문화적 평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sup>6)</sup>
  - "국가로부터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가 공급되어야 하는 국가, 즉 문화에 대한 국가적 보호·지원·조정 등이 이루어지는 국가"
  - "문화의 자율성보장을 핵심으로 하면서 문화영역에 있어서 건전한 문화육성 과 실질적인 문화향유권의 실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국가"<sup>8)</sup>
- 우리나라 헌법에서 문화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 영역에서 평등권, 예술의 자유, 예술가의 권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권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 헌법에서 '문화국가'라는 문언이 명시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 히 하고"라고 선언하면서 문화라는 표현이 등장
  - 헌법 제9조를 문화국가원리 또는 국가목표규정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학문과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 문화적 평등의 규정을 통해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실익이 있을 것임
  - 국제사회에서 '문화권'이 중요한 인권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못하고 있음
  - 문화국가원리에서 문화권이 도출될 수 있는지, 또는 문화권이 인권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화권의 헌법상 근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 문화권의 헌법상 근거

-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 헌법 제22조에서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 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함으 로써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명시함
- 평등권에서 문화적 평등권 또는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접근권의 평등 도출이

<sup>5)</sup> 성낙인,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유럽헌법연구 제30호, 유럽헌법연구, 2019, 9쪽.

<sup>6)</sup>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5, 422쪽.

<sup>7)</sup>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143쪽; 정만희, 헌법강의, 동아대출판부, 2016, 135쪽.

<sup>8)</sup> 김수갑, 문화국가론, 충북대출판부, 2012, 82쪽.

가능하고, 예술의 자유에서 창작의 자유 도출이 가능

- 사회권(생존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해석할 때 초기에는 주로 물질적 최저생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지만 근래에 정신적 삶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 오면서 문화적인 삶으로 확대되어 인식되고 있음
- 문화권을 헌법상 근거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아마도, 첫째,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었던 점, 둘째, 문화권의 개념상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셋째, 문화권의 내용이 복합적이어서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3)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나타난 문화국가의 원리

#### ○ 문화국가의 조건

-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의 자율영역은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때문이다. 헌법은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이 문화국가의 성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제36조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9)

#### ○ 전통의 정당성

-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10)
-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

<sup>9)</sup> 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

<sup>10)</sup> 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판례집 17-1, 1, 17-18 헌재 2011. 2. 24. 2009헌바89, 판례집 23-1상, 108

- 위 조항은 인터넷게임의 개발 또는 제공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한 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제공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인터넷게임 관련 산업이나 문화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sup>11)</sup>
- 반대의견(재판관 김창종, 조용호) 위 조항은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건국헌법 이래 헌법의 기본워리로 채택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워리에 반한다.<sup>12)</sup>

## ○ 음반제작자의 등록제도

- 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비디오물을 포함하는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공보부에 등록할 것을 명하는 것은 음반제작에 필수적인 기본시설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폐해방지 등의 공공복리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나 검열제와는 다른 차원의 규정이고, 예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3)
-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 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음반 제작자의 등록제도는 실제에 있어 허가제와 다름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예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 제1항과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고, 재력이 있는 자와 재력이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14)

## ○ 음반제작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 구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시설은 임차 또는 리스 등에 의하여도 갖출 수 있으므로, 동항 및 그 처벌조항인 동법 제13조 제1항 제1 호는 동법 제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상 금지된 허가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sup>15)</sup>

## ○ 학교정화구역 내의 극장 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

- 극장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제한은 공연물·영상물이 지니는 표현물, 예술작품으로서의 성격에 기하여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측면 이외에 표

<sup>11)</sup> 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등, 판례집 26-1하, 176, 197

<sup>12)</sup> 판례집 26-1하, 176, 197-199

<sup>13)</sup> 헌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5-286

<sup>14)</sup> 현재 1993. 5. 13. 91헌바17

<sup>15)</sup> 현재 1993. 5. 13. 91헌바17, 판례집 5-1, 275, 287-290

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16)

# 3. 문화권의 내용

## (1) 일반적 내용

- 문화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권의 영역 역시 인간의 삶 전반과 관련을 맺고 있으면 인간의 삶의 변화와 확장에 따라 확장되 는 경향
- 스페인의 「문화권과 의무에 관한 헌장」에서 열거한 문화적 권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언어의 사용, 개인과 집단적인 종교표현, 기회의 평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중문화의 제공, 문화 교육-가치·내용 등, 다문화 교육-다른 문화의 존재, 경제·물질 및 인프라 기금에 대한 접근성, 유산에의 접근성-기념물·전수 등, 지방미디어에의 접근성, 인터넷에의 접근성, 대중문화 활동에의 참여, 창조 및 문화·예술적 생산에의 참여, 문화 협력에의 접근 및 참여, 문화적 표현을 위한 공간, 대중교통수단에의 접근성 등을 규정<sup>17)</sup>
-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참여권, 문화환경권 등으로 유형화한 바 있음<sup>18)</sup>
- 문화권의 범주와 세부영역<sup>19)</sup>
  - 김기곤은 문화권을 문화에 대한 권리와 문화적 권리로 구분
  - 문화에 대한 권리는 문화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이념적 인권의 관점으로 규정하는 것
  - 문화적 권리는 문화영역에서 개인이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인권 또는 기본권을 규정하는 개념

#### (2) 문화권의 주체

○ 기본권의 주체는 대체로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학설은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인간의 권리인 경우 외국인에게도 폭넓게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

<sup>16)</sup> 헌재 2004. 5. 27. 2003헌가1등, 판례집 16-1, 670, 683

<sup>17)</sup> Laaksoen, A., "통합의 구축: 문화권의 정책 적용",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 국제회의 자료집, 문화관 광부, 2006, 250-251쪽; 김기곤, "한국사회의 문화권 구성과 제도화",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제2 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218쪽 재인용

<sup>18)</sup> 국가인권위원회,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2004.

<sup>19)</sup> 김기곤, "한국사회의 문화권 구성과 제도화",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제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210쪽.

## (3) 문화권의 성격

- 문화권의 내용 중 자유권적 성격의 문화권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함
  - 국가로부터 강제되거나 규제받지 않을 자유이므로 인간의 권리에 해당
- 문화권이 주권적 공권성이나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예술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는 방어적 성격이 분명하고, 사회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것처럼 문화적 영역에 있어 최소한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으면, 문화적 영역에 있어 차별 금지가 헌법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권의 성격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적 성격이 있다고 보아야 함
  - 전통적 의미에서 차별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엑세스 즉 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최대한 동등하게 해 주어야 함을 의미함
- 문화권의 내용 중 사회권적 성격의 문화권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국가의 적극 적인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며 국가의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보장이 가능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수준의 문화적 복지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할 것임
  - 문화권의 특성상 참여하면서 향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 에 사회권적 성격의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주체를 국민에게만 인정할 경우 문제가 있음
- 문화권의 속성상 개념 본질적으로 복합적 성격이 있지만, 현대 국가에서 복합적 성격의 기본권 등장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있음

# 4. 문화권의 재구성

## (1) 문화기본법상 문화권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문화권'이 기본권으로 명시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기본법」에서 명시하기에 이르렀음
-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규정함
  -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할 권리
  -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 문화를 향유할 권리

## (2) 문화권 재구성의 필요성

- 문화권의 경우 좁게는 예술의 자유로서 창작의 자유를 강조해 왔지만, 최근에는 문화향유권, 문화복지권으로 확대되는 경향
  - 예술의 자유로서 창작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서 전통적으로는 자유 권의 성격이 강하나, 예술가의 자유로 국한될 위험성
  - 전통적으로 문화권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방해받지 않을 자유로 자유권적 성 격이 강한 것으로 이해
  - 문화권은 연대권적 성격이 강하고 참여, 향유, 접근의 관점이 중시되어야 함
- 따라서 문화권 정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화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문화창작 권, 문화활동참여권, 문화향유권 등이 강조되어야 하고, 문화환경에 대한 접근권 등도 체계화되어야 함
- 그러나 국가가 국민들에게 일정한 문화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확대 될 필요성
  - 문화권을 예술의 자유로 좁게 보면 자유권의 성격을 띠지만, 문화권은 문화복 지에 관한 적극적 권리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 있음
  -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는 물질적 최저 생활 이외에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음

## (3) 사회적 권리로서 문화권 강조

- 사회권적 기본권 관점에서 문화권의 강조
- 사회권(생존권) 및 그 사회권의 중핵을 이루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초기의 물질적 삶 중심에서 정신적 삶으로 옮겨가면서 그 정신적 삶의 중심에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문화국가원리는 사회국가원리로부터 비롯되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음<sup>20)</sup>
- 국민이 국가에게 일정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이나 보장 정도 는 문화권의 내용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복지국가의 원칙상 이념적으로는 최대한 보장을 지향하지만, 문화안전망 차원에서는 최소한의 보장이 현실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로 발전하면서 적정한 보장으로 수렴할 것으로 기대됨

#### ○ 문화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에서 문화향유가 필요한 모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 등의 문화 전 분야에서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sup>20)</sup> 성낙인,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유럽헌법연구 제30호, 유럽헌법연구, 2019, 6쪽.

보장하고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 문화보장 또는 문화서비스의 보장이란 국민에게 문화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 되어 인간다운 문화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
- 일본의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적으로 최저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명시

#### (4) 법제화 방향

- 문화권은 대체로 문화에 관한 표현의 자유, 창작과 수용에 관한 권리,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 문화복지에 대한 요구권, 문화적 공동선이나 연대에 관한 권리, 문화정체성과 문화유산에 대한 집단적 권리 등을 포함함
  - 문화권은 전통적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등의 체계로 접근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음
  - 전통적인 주관적 공권에 포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인권 개념의 확대, 문화적 자유와 복지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문화권의 권리적 성격을 강조하는 국제인권법, 세계 각국의 헌법의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문화권은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함
- 문화권의 개념과 내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별적 문화권의 내용에 따라 기존의 기본권이나 인권개념과 달리 개인적 공권의 성격과는 다소 다르게 되고,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정도도 기존의 자유권이나 사회적 기본권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sup>21)</sup>
  - 문화향유 및 문화접근, 문화복지를 통한 사회적 돌봄과 사회적 혁신, 사회통합, 국격의 제고 등이 강조되어야 할 시기임
-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의 최저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고려한다면 문화적 영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이미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평등 창조 참여 향유할 권리를 명시함
- 문화권의 복합적 성격과 종래의 기본권 체계를 동시에 존중한다면 문화자유권으로서 '문화창작권', 문화적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문화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문화복지권', 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향유할 '문화향유권'(=문화참여권), 문화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문화적 환경을 제공받을수 있는 '문화접근권'(=문화환경권)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sup>22)</sup>

<sup>21)</sup> 정광렬 외, "문화국가를 위한 헌법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67쪽.

- 문화창작권: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적 표현을 하며, 창작을 통해 개인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킬 권리 또는 문화생태계의 관련 종사자들이 창작활동이나 서비스 생산활동에서 적절한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
- 문화평등권: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문화복지권: 문화정책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문 화서비스를 받을 권리
- 문화향유권(참여권): 국민 개인이 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향유하며,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 건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 문화접근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여가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sup>22)</sup> 유사한 지적으로 윤소영,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25 쪽 이하.

# Ⅱ. 문화보장

# 1. 문화보장의 필요성

## (1)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문화적 수요 증가

-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향상
  -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GNI)<sup>23)</sup>은 2000년 1377만원, 2010년 2673만원, 2019 년 3736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sup>24)</sup>
  - 이는 32,114달러이고 2019 통계청 KOSIS 기준, G20 국가 내 상위 12위에 달하는 수준임<sup>25)</sup>

## ○ 문화적 수요 증가

- 소득수준의 향상은 문화적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먹고 사는 문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극복하면, 생활의 질을 높이고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
- 생활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문화생활
   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음
- 문화생활은 예술·공연·관광·체육·미디어 등의 광범위한 영역의 생활을 뜻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문화생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할 수 있음
- 소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 문화적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를 잘 보여주는 현상 중 하나가 영화시장의 급격한 성장임.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 영화 시장 중 북미-중국-일본에 이은 4위의 규모임<sup>26)</sup> 관람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른바 '천 만 영화'는 2003년에 처음 나왔고, 2019년에는 5편에 이를 정도로 영화시장이 성장하였음<sup>27)</sup>

#### (2) 4차 산업시대의 인간 삶의 본질적 변화

○ 노동에 대한 가치관 변화

<sup>23) 1</sup>인당 국민소득, 국가경제규모 등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지표로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총소득을 의미하므로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 소소득을 더하여 산출

<sup>24)</sup> 국가지표체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1 (최종접속일: 2020.12.10)

<sup>25)</sup> 통계청연간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111Y002&checkFlag=N (최종접속일: 2020.12.10)

<sup>26)</sup> https://www.motionpictures.org/wp-content/uploads/2020/03/MPA-THEME-2019.pdf

<sup>27)</sup> 다만, 2020년은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영화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양상임

-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4차 산업시대는 인류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인공지능은 사무직근로자의 일자리를, 로봇은 육체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공사이 큼
- 전통적인 노동에 대한 개념이 바뀔 수도 있고, 노동의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음
- 부동산<sup>28)</sup>과 금융<sup>29)</sup> 등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자산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이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냉소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이는 노동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조장할 우려조차 있음

## ○ 신기술의 발달과 문화상품의 다양화

- 인공지능·로봇·가상현실 관련 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쾌락을 제공할 것임
- 신기술은 문화예술영역의 융합과 분화를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시킬 것이고, 문화상품은 매우 다양해질 것임
- 이에 따라 점점 더 쾌락과 재미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문화 적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임

## ○ 사회풍조의 변화

- 노동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가면서 일하는 보람보다 쾌락을 중요시하고, 성취 감보다 생활의 여유에 주안점을 두는 사회 풍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3)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변화

- 문화적 삶의 질 중요시
  - 고도성장기 시대에는 사회적 지위의 상승과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삶의 목표 이자 삶의 질을 판단하는 데 최우선 요건이었음. 이는 물질적 가치의 추구로 이어지기도 했음
  - 그러나 저성장시대에 진입하면서 주어진 여건에 맞춰 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음. 이른바 '소확행'의 열풍이 한 예라고 할 수 있음

<sup>28)</sup>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6.58%,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16%, 2013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0.45%, 2017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8.26%였다. 현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가격은 28.3% 오른 셈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v&oid=023&aid=0003556674&date=2020082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최종접속일: 2020.12.10)

<sup>29)</sup> 종합주가지수는 2020년 12월 27일 지난 11년 동안 최고상승률로 마감했다. 2019년 대비 상승률은 27.72%였다.

- 사회적 성공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 현재를 즐기려는 소위 '욜로족'들이 늘어 나고 있음
- 2016년 1인 가구 비율은 27.9%였으나, 2019년 30.2%를 기록할 정도로<sup>30)</sup> 1 인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는 자녀양육과 결혼비용을 부담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기도 함
-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존재하나, 퇴근 이후 여유시간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함. 여유시간을 각종 문화생활로 활용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임
- 문화적 삶의 질 보장 필요성
  - 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
  - 문화적 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다른 욕구가 충족되어야 추구하는 후순위적 가 치에 머물게 되지 않을 것임
  - 경제적 사회적 삶의 질 보장을 넘어서 문화적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단계 로 넘어가고 있음

# 2. 문화보장의 정의와 범위

○ 문화보장의 개념 정립에 앞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규정하고 있 는 정의규정들을 살펴보고자 함

####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내용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사회보장의 내용을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평생사회안전망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 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관련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sup>30) 2019</sup>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7&checkFlag=N (최종접속일: 2020.12.10)

####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 ○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 ○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 형 사회보장제도

## (2)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사회복지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 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한부모가족지원법」
    - 바.「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의료급여법」
- 러.「기초연금법」
- 머.「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3) 문화보장과 사회보장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으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사회안전망이 있음
  -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서비스에 해당
  - 현행법체계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이 사회복지의 상위개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려움
  - 오히려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양자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헌법은 복지국가이념을 실천하고자 함<sup>31)</sup>
  -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음

## ○ 문화보장인가 문화복지인가?

-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현행법상의 태도에 따라 규정짓자면 사회보 장이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여지가 있음. 그러나 '복지국가' 또 는 '복지제도'를 추구하기 위한 제도 중의 한 축이 사회보장이기도 함
- 복지에는 사회복지 외에도 주거복지·교육복지 등도 포함됨.

<sup>31)</sup> 헌법재판소 1995. 11. 30. 94헌가2

- 사회보장이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수단을 보아야 함
- 그렇다면 최소한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문화복지라고 칭하기 보다는 문화보장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복

## (4) 문화보장의 정의와 내용

- 사회보험이 문화보장 영역에서 포함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
  - 문화보장을 문화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개념정의하지 않고, 사회보장 과 동일선상에서 개념정의를 시도한다면 문화보장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봄
  - 사회보장과 문화보장을 대칭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특히 사회보장의 네 가지 중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제도는 문화보장에 포함될 수 없음
  -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처럼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문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사 안임.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문화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현실 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문화의 속성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
  - 게다가 보험이란 미리 일정 액수의 금전을 각출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사회보험은 이러한 보험을 국가가 관리하면서 해당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임
  - 문화보장을 사회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실 현가능성이 낮음
  - 첫째, 문화의 특성은 다양성과 가변성인데,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를 보장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명제임. 각자 원하는 문화적 취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임
  - 둘째, 사회보험은 의무가입과 강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음.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민의 의무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은 국민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음. 생계와 직결되지 않는 문화적 생활 보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강제할 경우 반대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음
  - 셋째,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사회보험은 국가의 재정투입이 필수적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지만, 문화의 속성상 수혜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음. 재정투입대비 효과가 저조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

음

#### ○ 공공부조

-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함
- 문화보장에 있어서 공공부조란 문화를 향유할 능력이 없거나 향유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문화이용권제도는 공공부조에 가까움. 따라서 문화보장에 공공부조 는 포함될 수 있음
-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함(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4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 용권을 지급할 수 있음(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 ○ 문화서비스

-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저수익성으로 인해 민간기업 및 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복지서비스를 말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이 주로 사회서비스를 담당함
-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문화보장의 한 축이 되어야 문화보장의 전달체계가 갖 춰질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임. 민 간영역에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공공영역에 사회복지시설이 있 음
- 문화서비스 관련 인력양성은 중요하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형태의 새로운 인력 관련 제도를 문화기본법에서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문화 분야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가가 문화영역을 직접 관리감독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문화예술인의 반발을 살 우려가큼. 기존 제도들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점도 고려해야 함
- 향후 문화서비스의 양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할지 현재로선 속단하기 어려우므로 시설과 법인에 관한 사항들을 문화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문화기본법은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함
- 코로나 19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방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문화보장 전달체계도 대면방식 뿐만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 향후 문화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률로 담아야 할 것임.

## ○ 문화안전망

- "사회안전망"이란 4대 보험을 1차 사회안전망으로, 공공부조를 2차 사회안전 망으로 간주하여 양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봄.
- 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함
- 이러한 평생사회안전망 개념을 고려했을 때, 문화안전망의 구축과 운영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첫째, "문화안전망"이란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 동안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문화안전망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향유를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셋째,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 문화보장의 정의

- 문화보장은 문화공공부조, 문화서비스, 문화안전망, 문화이용권을 포함함
- "문화보장"이란 사회적 환경 변화 및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이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공공부조, 문화서비스 등을 말함

#### ○ 문화보장의 내용

- "문화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문화를 향유할 능력이 없거나 향유하기 어려운 국민의 최저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문화서비스"란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문화복지, 문화·여가시설 제공, 예술교육, 문화산업진흥 등의 분야에서 문화권을 보장하

- 고 사회구성원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문화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문화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보장 제도를 말함
- "문화이용권"이란 특정한 생애주기에 있는 국민, 문화소외계층 또는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있는 국민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관광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함

# Ⅲ. 기본법 체계 정비와 통합 문화행정 기반 구축

# 1. 기본법의 이해와 문화기본법체제의 문제

## (1) 기본법의 개념

- 기본법은 "정책입법·프로그램법으로서의 기능과 성격을 가지는 독특한 입법형식, 즉 당해 정책의 이념이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시책을 추진하거나 제도의 정비를 도모하는 입법유형<sup>32)</sup>"
  - 기본법이라는 입법유형의 등장은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대에 따른 행정권의 확대 현상을 바탕으로 함
  - 보다 "전망적인 것"이나 프로그램적인 것 또는 정책의 지향점·방향을 제시하고 그 틀에서 입법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행정관에서 비롯된 것.
- 일반적으로 '기본법'이라 하는 것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률의 분야 또는 계열 (예를 들어, 환경 분야, 여성분야, 청소년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체계화 및 용이한 이해, 그리고 입법경제를 도모하는 입법유형 또는 입법기술을 의미
  - 기본법에 규정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기본용어의 정의, 정책추진의 원칙 또는 방향, 추진체계, 재원의 조달방법 등을 들 수 있음
- 기본법에서 정책 또는 규제의 지향점이나 방향성 또는 대략적인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 내용을 다른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연계하여 개별 법률의 목 적 조항에서 기본법에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것을 명시 적으로 밝히고 이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
- 법체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기본법-개별 법률의 관계가 내용적으로 총론-각론의 연계성을 갖게 되는 이념형적인 기본법체제를 형성

## (2) 기본법의 용례와 평가

- 형식적 의미의 기본법 용례로 기본법의 개념을 법률 이름에 기본법이 들어있는 것은 기본법으로 본다는 것.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기본법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관계없이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면 기본법이라는 것.
- 실질적 의미의 기본법 용례로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 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법률을 기본법이라 지칭하는 경우. 이 용례는 법률 이름에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있는가에 관계없이 실질적 의미에서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음.

<sup>32)</sup>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127쪽

- 기본법이라는 이름이 없다고 해도 그 내용으로 볼 때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기본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상 담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는 법규범을 지칭하는 의미로 기본법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의미에서 기본법은 헌법과 사실상 동의어.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이 용례
- 현대 입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어떤 입법 분야에서 전체적인 정책방향을 잡아주는 입법의 필요성.
- 비록 기본법이 그 자체로서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다른 개별 입법 과 묶여 있는 일종의 '패키지'로 인식된다면 실효성이 있는 법규범이라는 전제조 건도 충족
- 기본법이 단순히 선언적 규정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체제에 맞추어서 개별 입법에서 구체적인 정책사항이 규율될 필요.

## (3) 문화기본법과 문화법제의 개별법 간의 체계 부정합의 문제

- 과거 문화행정이 문화예술 영역에 국한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 문화행정의 외연 은 확장 추세에 있음
- 현행 문화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체계성 문제 등으로 인해 확장된 문화정책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구체적으로, 문화 부문 최상위 법인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이 부 문별 기본계획을 포괄하지 못함
-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부문별 기본계획 및 세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불일치로 인해 정책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문화정책의 지향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관계, 문화의 자율성 과 다양성 보장 등에 대한 원칙 정립과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기본법-개별법 체제의 구축이 필요

# 2. 문화기본법체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 (1) 문화기본법과 개별 법률과의 통합적 연계

- 문화기본법의 기본 규범으로서의 위상 정립
  - 현행 문화기본법은 문화 분야의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1972년 제정), 문화산업기본법(1999년 제정) 등 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제정 (2013.12)되어 기본법이 선행하지 못하여 개별 법률을 논리적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문화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본법과 개별 법률들의 통합 적 연계가 가능토록 법체계를 정비 필요
- 문화국가의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 문화권 관련 권리 규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관계,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을 위한 원칙의 정립과 명문화
- 문화기본법이 정하는 문화의 가치 확산을 지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과의 연계 규정 신설

# ○ 문화기본법을 정점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체계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은 67개와 문화재청 소관법률 12개의 체계 분석

〈표 3-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체계

	중분류	법명
	기기내 기러 투법법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과거사 관련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문화·여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제문화교류진흥법
문화		도서관법
기본법		독서문화진흥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작은 도서관 진흥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문화·예술 진흥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대학민국예술원법

		문학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문화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뜨러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사행산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국어기본법
	어문	점자법
		한국수화언어법
	언론 및 미디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관계법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MI	VOI 811	예술인 복지법
예물	술인 복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인	l문·정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향교재산법
	저작권	저작권법
	지역문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7		지방문화원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바둑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체육	씨름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문화기본법을 정점으로 하는 문화 분야 법률 79개를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과거사관련 특별법(2개), 관광(5개), 문화·여가(8개), 문화예술진흥(8개), 문화 산업(12개), 문화재(12개), 사행산업(1개), 어문(3개), 언론 및 미디어(6개), 예 술인복지(2개), 인문·정신(3개), 저작권(1개), 지역문화(3개), 체육(12개)으로 나 누어 볼 수 있음 - 문화기본법 이외에 중분류 기준에서 기본법을 법률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관광 분야의 관광기본법이 있고, 문화·여가 분야에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문화산업 분야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 어문 분야의 국어기본법 등 5개가 있음. 이와 같은 중분류 영역의 기본법들은 문화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문화기본법의 하위 범주의 문화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의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입법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관광기본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같은 문화 분야의 중분류 범위를 총괄하는 중분류 기본법이제정될 필요가 있음.

## ○ 기본법-개별법 체계 명시 및 개별 법률과의 연계성 확보

- 문화 관련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이 문화기본법의 정책방향과 통합적으로 연계·해석 될 수 있는 법체계 정비
- 문화 관련 법률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
- 문화기본법에 국가가 추구해야 할 미래지향적 가치로서 문화가치 확산과 각 부문별 문화진흥 방안을 명시
- 각 부문에 문화기본법이 천명하는 이념과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분야별 문화정책을 중분류 기준으로 재분류 하여 △문화역량·문화다양성 △언 어문화진흥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진흥 △문화교류·협력 △문화예술과 문화산 업 진흥 △체육·관광 진흥 등의 분야별로 문화정책 추진방향을 개별 조문 별 로 규정하여 기본법-개별법 체계에 따른 문화정책 추진의 기본틀 마련
- 중분류 기준으로 문화기본법에 언급된 분야의 개별 법률의 제1조 목적 조항에 "문화기본법 제0조제0항에 따라"제정되었음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기본 법과 연계성 체계성 제고

## (2) 문화행정의 통합체계 구축

- 문화행정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진흥 종합계획의 범주의 재설정 필요
  - 문화진흥계획의 대상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영역의 문화행정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 범정부차원에서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정을 포괄하는지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
  - 문화기본법이 규정하는 문화의 정의가 최광의라는 점과 문화행정의 목표가 국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의 가치 확산이라는 점에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는 문화정책의 주무부처일 뿐이며 문화행정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성질의 것

- 정부의 문화행정을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과 문화 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문화정책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이것이 문화기본법 이 정하는 문화진흥종합계획의 대상 문화의 가치 확산정책과 문화정책이 함 께 포괄될 수 있도록 규정
-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은 포괄범위가 광범위하여 일률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두기 보다는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의 원칙을 규정하여 정책의 수립·추진이 이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범부처에서 추진하는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이 문화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정책도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의 일부분인 만큼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의 원칙이 적용
- 범부처 차원의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의 범주 확정을 위한 문화정책관련 법률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총 17개 부처 소관의 80개의 법률에서 '문화'에 대해 규정
  -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의 대상은 80개의 법률에서 정하는 개별 영역의 문화정책이 될 수 있으며, 문화진흥종합계획에서는 일차 적으로 17개 부처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문화정책을 포괄할 필요
  -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문화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화적 성격의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공공외교법」에서 정하는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 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 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이라 정의되 는데 이는 문화정책의 일종이라 볼 수 있어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음

〈표 3-3〉 범부처 차원의 문화정책관련 법률

소관부처	법률명	용례	조항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동등 직장문화	<b>§</b> 5
(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문화	§4
과학기술정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문화	§1
보통신부 (7)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문화	<b>§</b> 7
(1)	방송법	방송문화	§4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문화	<b>§</b>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문화	<b>§</b> 3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가정 양립 연구문 화	<b>§</b> 1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문화	<b>§</b> 6
	고등교육법	안전문화	§27의2
	교육기본법	학술문화	<b>§</b> 24
교육부 (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안전문화	<b>§</b> 27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시민문화	<b>§</b>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문화	§4
국방부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병영문화	<b>§</b> 31
	건축기본법	건축문화	§11
	건축사법	건축문화	§1
	교통안전법	교통문화	<b>§</b> 15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문화	§24 <b>의</b> 2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향토문화	<b>§</b> 25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문화	<b>§</b> 3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문화	§4
	그기그워바다 두병배	지역문화	<b>§</b> 15
기획재정부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고유정신문화	<b>§</b> 35
(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기업문화	<b>§</b> 1
	김치산업 진흥법	김치문화	§4
누리ᄎ사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건전한 여가문화	§17의2
농림축산식 품부 (11)	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의 전통문화	<b>§</b> 33
	농어촌정비법	전통문화	<b>§</b>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 문화	§11의2

		전통 식생활문화	<b>§</b> 22
		전통 농경문화	<b>§</b> 45
	식생활교육지원법	전통 식생활 문화	§14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쌀 문화	<b>§</b> 2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양성평등문화	<b>§</b> 1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전한 술 문화	§4
	근하다 하다 근답인하에 단한 답할	조화로운 식문화	<b>§</b> 1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문화	법률명
	한식진흥법	음식문화	<b>§</b> 2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화훼문화	법률명
нпн (о)	법교육지원법	법문화	<b>§</b> 5
법무부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b>§</b> 18
	コロスプレスエリ出	직장 내 문화	<b>§</b> 2
	국민건강증진법	절주문화	<b>§8의</b> 3
	국민영양관리법	식문화	<b>§</b> 2
		기부문화	§27의3
	노인복지법	전통문화	<b>§</b> 24
보건복지부   (9)	사회복지사업법	다문화	§34 <b>의</b> 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사회공동체문화	§1
	입양특례법	입양문화	<b>§</b>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생명존중문화	법률명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생명나눔문화	§6의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문화	<b>§</b> 2
산업통상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문화	<b>§</b> 15
원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문화	<b>§</b> 5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융합문화	<b>§</b> 3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문화	<b>§</b> 5
		가족공동체문화	<b>§</b> 15
		가정생활문화	<b>§</b> 28
		가족여가문화	<b>§</b> 28
	건강가족기본법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b>§</b> 28
여성가족부 (5)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 화	<b>§</b> 28
		합리적인 소비문화	<b>§</b> 28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b>§</b> 2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건전한 결혼문화	<b>§</b> 1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	법률명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문화 활동	<b>§</b> 2
중소벤처기 업부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동반성장 문화	§20의2
통일부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족의 전통문화	<b>§</b> 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안전문화	<b>§</b> 40
	국립해양박물관법	해양문화	<b>§</b> 1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문화	<b>§</b> 1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건전한 낚시문화	§1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건전한 여가문화	§17의2
해양수산부	에 관한 특별법	전통문화	<b>§</b> 31
(13)	농어촌정비법	전통문화	<b>§</b> 2
	소금산업 진흥법	식생활 문화	<b>§</b> 1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전통 어업 문화	<b>§</b> 36
	어촌·어항법	어촌문화	§49의2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양성평등문화	<b>§</b> 10
	해사안전법	해사안전 문화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양문화	법률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해양문화	<b>§</b> 3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조직문화	<b>§</b>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기록문화	§46의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문화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보행안전문화	<b>§</b> 27
행정안전부 (9)	온천법	온천문화	§4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향토문화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문화	§66의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지역문화	<b>§</b> 1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문화	§1
환경부 (2)	대기환경보전법	친환경운전문화	§77조의 2
ZOT (4)	물관리기본법	물문화	<b>§</b> 35

## ○ 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문화기본법과 개별 법률의 법률 위계 정립 및 문화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기본법 상 종합계획과 개별 법률에 따른 정책의 수립주기 조정 필요
- 개정 문화기본법 상 문화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부문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순차 수립 방안 마련. 정책수립 주기 조정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개 정
- 정책수립 주기 조정 등을 위한 문화기본법
- 非법정 계획, 법령상 정책 수립 주기 미규정 계획, 계획 수립 주기 불일치 계획 등의 수립 주기 조정
- 시행령 위임 및 개정을 통한 부문별 세부 계획 수립주기 연동 및 순차 수립 방안의 강행 규정화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을 △문화역량 △언어문화진흥 △지역문화진 흥 △문화교류·협력 △문화예술 △문화산업 진흥 △체육·관광 진흥 등의 각 부문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법률에 따른 행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개별법상 계획 수립 조항의 경우, "문화기본법의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를 명시. 이를 위해 일괄개정법 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유사·중복 계획 수립 부담 및 수립 주기 불일치 등에 따른 유사 행정계획 수립 의무 반복 부과 등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함
- 지자체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계획 또는 연 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제
- 중복·유사 행정계획 난립 방지를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정책 통일성 확보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 규정된 문화정책 관련 행정계획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법률에서 정한 문화정책관련 행정계획을 보면, 관광(3), 문화·여가(5), 문화예술(6), 문화산업(7), 문화재(9), 어문(3), 예술인복 지(2), 인문(1), 지역문화(3), 체육(7) 등의 분야에서 40개 행정계획이 규정
- 계획수립 주기는 대다수가 5년이나 수립주기의 기산시점이 제각각이어서 행정계획의 수립이 매년 수시업무로 부과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어 일괄개정법을 통해 주기를 일정하게 맞출 필요가 있음
- 수립·시행권자는 대다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므로 수립·시행권자가 동일한 행정계획의 경우는 문화기본법에 따라 연계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

〈표 3-4〉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문화정책 관련 행정계획

중분류	법률명	조항	행정계획	주기	수립·시행권자
	관광기본법	<b>§</b> 3	관광진흥 기본계획	5년	정부
관광(3)	관광진흥법	<b>§</b> 49	관광개발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b>§</b> 6	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 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7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제문화교류진흥법	<b>§</b> 5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 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여가 (5)	도서관법	§14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5년	도서관위원회위 원장
	독서문화진흥법	<b>§</b> 5	독서문화진흥 기본 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b>§</b>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시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b>§</b> 5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 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연법	<b>§</b> 3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예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b>§</b> 5	공예문화산업진흥 기본 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6)	문학진흥법	<b>§</b> 5	문학진흥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b>§</b> 6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4	서예진흥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b>§</b> 3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b>§</b> 3	만화산업육성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	문화산업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산업 (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 한 법률	§4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 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b>§</b> 3	영화진흥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b>§</b>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콘텐츠산업 진흥법	<b>§</b> 5	콘텐츠산업 진흥 중·장 기 기본계획	3년	정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	<b>§</b> 8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시·군·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b>§</b> 7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 본계획	5년	문화재청장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산탁법	<b>§</b> 5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의 취득·보전·관리 기본계획	10년	국민신탁법인
문화재 (9)	문화자수리 등에 관한 법률	§4	문화재수리등 기본계획	5년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b>§</b> 6	문화재기본계획	5년	문화재청장
	신리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b>§</b> 5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종합계획	5년	문화재청장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2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 용 종합계획	5년	문화재청장

	위E한권정기 등에 관한 특별	<b>§</b> 9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5년	문화재청장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b>§</b> 5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 계획	5년	문화재청장
	국어기본법	<b>§</b> 6	국어 발전 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문(3)	점자법	<b>§</b> 7	점자발전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수화언어법	<b>§</b> 6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4의 2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 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복지(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 원에 관한 법률	<b>§</b>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 동 지원 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문·정신 (1)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의 진 흥에 관한 법률	<b>§</b> 9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 계획	5년	교육부장관/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b>§</b>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역문화 (3)	지방문화원진흥법	§3의 2	지방문화원 지원·육성기 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역문화진흥법	<b>§</b> 6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바둑진흥법	<b>§</b> 5	바둑진흥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생활체육진흥법	<b>§</b> 6	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스포츠산업진흥법	<b>§</b> 5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체육(7)	씨름진흥법	<b>§</b> 5	씨름진흥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통무예진흥법	<b>§</b> 3	전통무예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의 2	체육시설안전관리 기본 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 성 등에 관한 법률	<b>§</b> 5	태권도진흥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중분류별로 볼 때 논리 체계적으로 상위 계획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이 있는데 이들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기본법의 문화진흥종합계획에 따라 행정계획이 수 립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명시할 필요.

〈표 3-5〉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문화정책 관련 행정계획 중 상위 계획

중분류	법률명	조항	행정계획	주기	수립·시행권자
관광	관광기본법	<b>§</b> 3	관광진흥 기본계획	5년	정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7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여가	국제문화교류진흥법	<b>§</b> 5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 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독서문화진흥법	<b>§</b> 5	독서문화진흥 기본 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	문화산업진흥 중·장기 기 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b>§</b> 6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b>§</b> 6	문화재기본계획	5년	문화재청장
어문	국어기본법	<b>§</b> 6	국어 발전 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문·정신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b>§</b> 9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 계획	5년	교육부장관/문회체 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	지역문화진흥법	<b>§</b> 6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소관 법률에 규정된 문화정책관련 지방행정계획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에서 정한 문화정책관련 지방행정계획을 보면, 관광 (1), 문화·여가(5), 문화예술(4), 문화재(6), 어문(1), 인문(1), 지역문화(3), 체육 (2) 등의 분야에서 17개의 지방행정계획이 규정
  - 지방행정계획은 성질에 따라 국가행정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행정계획의 성격이 세부시행계획의 경우는 연차별로 즉 매년 수립하고 국가 행정계획과 병렬적으로 수립되는 경우는 국가행정계획과 동일한 주기로 수립
  - 지방행정계획의 수립·시행권자는 대체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이나 법률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하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모두 포함 되도록 한 경우도 있고 시군구청장을 수립시행권자로 규정된 경우도 있음
  - 국가행정계획이 사실상 수시로 수립됨에 따라 지방행정계획의 수립 또한 수 시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문제됨.

〈표 3-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문화정책 관련 지방행정계획

중분류	법률명	조항	지방행정계획	주기	수립·시행권자
관광 (1)	관광진흥법	<b>§</b> 49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시도지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7	여가활성화 시행계획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문화교류진흥법	<b>§</b> 7	국제문화교류진흥 지역계 획	매년	시도지사
문화· 여가 (5)	도서관법	§15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시도지사
(0)	독서문화진흥법	<b>§</b> 6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매년	시도지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b>§</b> 9	지역 박물관 및 미술관 진 흥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 한 법률	<b>§</b> 6	지역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	5년	시도지사/시군구 청장
문화예	공연법	<b>§</b> 3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		시도지사/시군구 청장
술(4)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b>§</b> 6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5년	시도지사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4	서예진흥 시행계획	매년	시도지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에 관한 법률	<b>§</b> 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매년	시·도지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시·도지사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b>§</b> 7	문화재보호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시·도지사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b>§</b>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 비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경주시장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b>§</b> 1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연도별 시행계획	매년	관할 시·도지사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b>§</b> 5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 연 도별 시행계획	매년	서울특별시장
어문 (1)	한국수화언어법	§7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매년	시도지사

인문· 정신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 획	매년	지방자하단체의 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에 관한 특별법	<b>§</b>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실시계획	매년	광주광역시장
지역문 화(3)	지방문화원진흥법	§3의 2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지역 별 시행계획	5년	시도지사
	지역문화진흥법	<b>§</b> 6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
체육 (2)	국민체육진흥법	§4	지역체육진흥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
	생활체육진흥법	<b>§</b> 6	생활체육진흥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

- 문화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종합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수립한 경우에는 문화진흥계획에 포괄될 수 있는 지방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수립하기 보다는 이의 수립을 의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통합 문화행정의 체계의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지역문화진흥종합계획의 수립으로 의제할 수 있는 지방행정계획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들 수 있음. 연차별 시행계획의 경우는 지역문화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 연차별 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면 이의 수립을 의제할 수 있음. 문화재청 소관 법률의 경우는 별도의 논의 필요.

## ○ 국가문화전략회의 설치·운영

- 문화진흥종합계획이 범정부차원의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을 포괄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위원회의 필요성 제기
- 국민의 문화권 보장과 이를 위한 문화보장을 비롯한 문화정책은 문화국가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문화전략회의의 설치 필요
- 당연직 구성원으로는 문화의 가치 확산 정책을 관장하는 주요 부처의 장관이 되며 문화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회의를 구성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의 간사가 됨
- 국가문화전략회의의 설치를 통해 국가 문화 정책의 통일성·일관성 및 효율성 확대 기대
-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문화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시도지사 또는 시군 구청장이 의장이 되는 지역문화전략회의의 설치를 규정. 지역문화전략회의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는데 특히 지역문화진 흥법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의 설치로 지역문화전략회의의 설치를 의제할 수 있음.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의 정하는 위원회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개별 법률 상 설립 위원회는 총 42개 위원회로 의사결 정 단계 다층화에 따른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있음
- 위원회의 설치가 개별 법률의 제·개정에서 각각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화법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위원회 설치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결여
- 행정계획의 체계성 정비와 함께 정책위원회의 정비도 필요한 실정이며 정비의 방향은 기본법-개별법 체계의 정비/행정계획의 정비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

〈표 3-7〉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설립 위원회

중분류	법명	조문	위원회명	소속	위원	위원장
	관광기본법	<b>§</b> 16	국가관광전략회의	국무총리	문화정책관 련 부처장관	국무총리
관광	관광진흥개 발기금법	<b>§</b> 6	기금운용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10	관광진흥법	<b>§</b> 17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구청장	위원장/부위 원장 포함 위 원 10명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국제문화교 류진흥법	<b>§</b> 8	지역국제문화교류 협의회	시ㆍ도지사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	부시장/부지사
문화·여 가	도서관법	<b>§</b> 12	도서관정보정책위 원회	대통령	위원장/부위 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 원	대통령이 위촉
	문 화 다 양 성 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b>§</b> 7	문화다양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지명
문화·예 술진흥	공공디자인 의 진흥에 관한 법률	§7	공공디자인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30 명 이하 위 원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b>§</b> 9	지역공공디자인위	시도지사 또		

			01-1	는 시군구청		
			원회	장		
	공 예 문 화산 업진흥법	<b>§</b> 6	공예문화산업진흥 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	위원장/부위 원장 포함 10명 이상 15 명 이내 위원	위원 중 호선
	문학진흥법	§7	문학진흥정책위원 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위원장/부위 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 원	위원 중 호선
	문화예술교 육 지원법	<b>§</b> 8	문화예술교육지원 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	위원장/부위 원장 2명 포 함 20명 이 내 위원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위촉
		<b>§</b> 9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협의회	시·도	위원장/부위 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	부시장·부지사
	문화예술진 흥법	<b>§</b> 20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위원장 포함 14명 이내 위원	위원 중 호선
	게 임 산 업 진 흥에 관한 법률	<b>§</b> 16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위 원	위원 중 호선
	애 니 메 이 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b>§</b> 16	애니메이션진흥위 원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위원장/부위 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 원	위원 중 호선
문화산	영화 및 비 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b>§</b> 4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부	위원장/부위 원장 포함 9인 위원	위원 중 호선
업		<b>§</b> 49	비디오산업진흥위 원회	영화진흥위원 회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위 원	위원 중 호선
		§71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부위 원장 포함 9인 이내 위 원	위원 중 호선
	이 스 포 츠 진 흥에 관한 법률	<b>§</b> 9	이스포츠자문위원 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출판문화산	<b>§</b> 17	간행물윤리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위원장/부위	위원 중 호선

	업 진흥법			진흥원	원장 포함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7	콘텐츠산업진흥위 원회	국무총리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	국무총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b>§</b> 5	고도보존육성중앙 심의위원회	문화재청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 명 포함 20 명 이내 위 원	문화재청장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 흥에 관한 법률	<b>§</b> 9	무형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	위원 중 호선
	문화재보호 기금법	§7	문화재보호기금심 의회	문화재청장		
문화재	문화재보호 법	<b>§</b> 8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 명 포함 80 명 이내 위 원	위원 중 호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4의 2	문화재수리기술위 원회	문화재청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위원	위원 중 호선
	역 사 문 화 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b>§</b> 6	역사문화권정비위 원회	문화재청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 명 포함 30 명 이내 위 원	위원 중 호선
사행산 업	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 회법	§4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	국무총리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	위원 중 국무 총리가 지명
어문	국어기본법	<b>§</b> 13	국어심의회	문화체육관광 부	위원장/부위 원장 포함 60명 이내 위 원	위원 중 호선
언론	뉴스통신 진 흥에 관한 법률	§9의 4	등록취소심의위원 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신문 등의	§24	등록취소심의위원	시ㆍ도지사		

			회			
	진흥에 관한 법률	<b>§</b> 36	언론진흥기금관리위 원회	한국언론진흥 재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 에 관한 법 률	<b>§</b> 7	언론중재위원회		40명 이상 90명 이내 위원	위원 중 호선
	잡지 등 정 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b>§</b> 9	정기간행물자문위 원회	문화체육관광 부	위원장/부위 원장 포함 9인의 위원	위원 중 서로 투표
	지역신문발 전지원 특별 법	§7	지역신문발전위원 회	문화체육관광 부	위원장/부위 원장 포함한 9명 이내 위 원	위원 중 호선
인문·정 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 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b>§</b> 6	인문학 및 인문정 신문화 진흥심의 회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	교육부장관/문 체부장관 <del>공동</del> 지명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b>§</b> 7	전통사찰보존위원 회	시 · 도지사	위원장 9명 이내 위원	위원 중 호선
지역문 화	아 시 아 문 화 중심도시 조 성에 관한 특별법	<b>§</b> 29	아시아문화중심도 시조성위원회	대통령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 인포함 30 인 이내 위 원	대통령이 위촉
		<b>§</b> 9	실시계획심의위원 회	광주광역시장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 인포함 20 인 이내 위 원	광주광역시장
	지역문화진 흥법	§6의 2	지역문화협력위원 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	문체부장관/위 원 중 호선
			시·도지역문화협 력위원회	특별시·광역 시·특별자치 시·도·특별자 치도		
		§14	문화도시심의위원 회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 정책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중분류 기준에서 분야별 문화정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거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위원회 중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경우는 국가문화전략회의의 위원 위촉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 있음.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위원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국가문화전략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3. 문화행정의 통합 체계 구축

#### (1) 통합적 문화인력 양성체계 구축

- 문화 인력은 문화진흥을 위한 인적 기반이 되나 현행 문화기본법의 문화인력 규정은 그것의 의미와 주요 정책이 불분명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인력은 그 의미와 내용, 업무 영역이 다소 불명 확하여 이를 '문화 전문인력'으로 개칭하고, 활동 분야를 문화진흥, 문화보장, 문 화서비스 제공, 문화·여가시설 운영 등으로 명확히 규정
- 문화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직종 또는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 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인력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
-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인재개발원이 필요
  - 통합적 문화인력 양성기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직무를 규정
  - 문화담당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 교육기관 부재에 따른 문화 분야 전문교육훈련기관 설립 필요

#### (2) 통합적 문화자워 관리체계 구축

-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 경관은 기본적으로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으로 구분되지만, 문화집단이 지표상에 이룬 인위적인 공간은 인간집단이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양자를 포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문화경관에는 민속을 배경으로 한 경관, 역사유적을 배경으로 한 경관, 자본 과 권력에 투입되어 설계된 경관, 사람이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자연적 경관 등이 포함됨
  - 지역 주민은 문화경관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 삶을 향유하고 자신들의 정체 성과 공동체의식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도 함
  - 문화경관이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를 이루는 요소

들을 분절적으로 다루지 않고 연속적이거나 통합적인 것으로 다룰 필요

- 통합체계는 차별적 요소를 예방하고 공적 서비스의 제공을 효율적으로 하면 서 국가의 개입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진흥을 위해 특정 지역의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관광자원·주민의 생활상 등을 문화경관으로 연계·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 복합문화단지

- 문화역량 증진을 위해 문화·여가·체육·관광 등을 위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집 적된 문화단지를 말함
-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일상생활 자체가 문화적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문화와 여가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주거나 경제활동의 문화적 측면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역량 증진을 위해 문화·여가·체육·관광 등을 위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문화단지(이하 이 조에서 "복합문화단지"라고 한 다)를 조성·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문화향유와 체험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가 복합문화단지를 조성·운영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운영·관리기구를 둘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문화단지를 조성·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할 것임

#### (3) 통합적 문화정보체계의 구축

## ○ 필요성

- 과거부터 지역에서 각각 따로 진행되는 문화행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등 문화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지역 문화정보전달체 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접근에 관한 것으로 정보화시대 이후 문화 생활증진을 위한 기본적 조건이 되어 왔음
- 대체로 가장 효과적인 정보전달 매체로 인터넷이 주목받고 있으나, 정보전달 이전에 정보의 취합과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교육, 환경, 산업, 사회복지, 교통 등에서는 이미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행정효율

- 을 높이고 행정의 중복을 예방하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지향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는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법」제19조의2제2항 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교 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함
-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폐 기물 재활용 촉진이 가능함
-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관련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교통사거 정보등과 공유하고 있음

# Ⅳ. 재정기반 및 공제사업

# 1.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재정지원의 필요성
  - 문화 진흥 사업의 경우 민간 영역의 자율적 발전이 우선이겠으나, 이른바 팔길이 원칙 또는 중립성 원칙에 입각하여 문화 영역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고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재원 조성과 후원 필요성
  - 문화 진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만으론 한계가 있음
  - 문화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야 융성할 수 있고, 관주도의 문화진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
  - 민간의 재원 조성과 후원문화의 활성화가 사회 영역의 자율적인 문화발전과 창조성 발현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이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함

# 2. 문화자산특별회계

- 문화자산특별회계의 필요성
  - 국가보유 문화자원 중에서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정부미술품, 국립박물 관·미술관 소장품, 문화·여가시설 등의 문화자산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특별회계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문화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요구됨
- 문화자산특별회계의 운용 관리 주체
  - 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평가금액과 같다.
  - 국가보유 문화재
  - 국립박물관 소장품
  - 국립미술관 소장품과 정부미술품
  - 문화·여가시설
  - 이상의 평가증가금액

-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국가보유 문화재, 국립박물관 소장품, 국립미술관 소장품과 정부미술품, 문화·여가시설의 평가감소 금액
  - 국가 아닌 자에게 매각된 립박물관 소장품, 국립미술관 소장품과 정부미술품, 문화·여가시설의 평가액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자산특별회계
  - 지역문화자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설치 운영이 필요할 수 있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문화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

#### 3. 공제사업

- 공제사업의 필요성
  -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 해배상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이를 공제사 업을 통해 배상 또는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문화체육관광인과 문화·여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 및 업무상 재해공제에 관한 사업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공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문화·여가시설의 안전사고와 문화 체육관광인의 퇴직 및 업무상 재해 관련 사업임

# 제4장 문화기본법 전부개정안

# 제 4 장 문화기본법 전부개정안

# I. 전부개정안의 방향 및 주요 내용

# 1. 전부개정안의 방향

- (1) 문화법제의 최상위 목표로서 문화권의 보장
- (2) 사회권적 기본권 관점에서 문화권 보장: 문화보장 제도
- (3) 특별한 생애주기 또는 위기·재난에서 문화안전망 구축
- (4) 문화진흥종합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 (5) 문화기본법-개별법체계 정비
- (6) 문화분야 인적·물적·공간 자원의 관리 기반 마련
- (7) 문화재정기반의 확대와 공제사업
- (8)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 2. 전부개정안의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의 가치 확산 제3장 문화보장과 문화서비스, 제4장 문화 진흥의 기반조성 제5장 문화재정기반과 공제사업 제6장 문화영향평가, 부칙으로 구성하여 본칙 46개 조문, 부착 4개 조문으로 구성
- 개정안의 형식은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안의 형식을 취하는데, 전부개정안 은 일부개정안과 달리 기존 조문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새로이 조문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음. 개정안에서 새로 추가되는 조문이 많아 가지조항이 지 나치게 증가하여 조문의 체계성과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전부개정안의 형식 을 취하는 것이 법체계 및 가독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입법절차는 일부개정이건 전부개정이건 동일함
  - 개정 법률의 조항의 다른 법률에 인용이 많은 경우에는 전부개정안으로 인해 조항인용 체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일부개정 형식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나 문화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인용되는 조문이 없어 전부개정안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인용체계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

- 전부개정안에서는 조문의 숫자가 상당하게 증가한 관계를 보다 체계적인 이 해를 위해 현행법과 달리 6개의 장으로 구분.
-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제4조(국민의 권리 등),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국민의 역할 등),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7개 조문으로 구성
- 제2장 문화의 가치 확산은 제8조(문화의 가치 확산의 원칙) 제9조(문화진흥 종합 계획의 수립), 제10조(문화진흥 관련계획의 수립),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숣), 제12조(국회보고), 제13조(지역별 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국가문화전략회의의 설치), 제15조(지역문화전략회의의 설치) 제16조(문화진흥 재정추계), 제17조(문화역량) 제18조(문화교류), 제19조(언어문화진흥), 제20조(전통문화와 지역문화진흥) 제21조(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 등 14개 조문으로 구성
- 제3장 문화보장과 문화서비스는 제22조(문화보장의 원칙) 제23조(문화안전망의 구축·운영), 제24조(문화공공부조사업), 제25조(문화서비스) 제26조(문화이용권), 제27조(민간의 참여와 협력) 등 6개 조문으로 구성
- 제4장 문화진흥기반의 조성은 제28조(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29조(국립문화인개발원) 제30조(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제31조(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제32조(문화의 달·날), 제33조(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제34조(문화경관의 연계관리), 제35조(문화·여가시설의 조성·운영), 제36조(문화정보화 시책), 제37조(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등 10개 조문으로 구성
- 제5장 문화재정기반과 공제사업은 제38조(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 39조(문화자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40조(문화·여가시설안전공제사업), 제41조 (문화체육관광공제), 제42조(공제의 가입) 등 5개 조문으로 구성
- 제6장 문화영향평가는 제43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제44조(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45조(문화영향평가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46조(문화영향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 등 4개 조문으로 구성
- 부칙은 제1조(시행일), 제2조(종합계획에 대한 적용례), 제3조(문화진흥관련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4개 조문으로 구성
- 개정안 이외에 기본법 및 종합계획의 개별법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개별법에 대한 일괄개정법 제정

# Ⅱ.「문화기본법」전부개정안 해설

# 1. 목적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권 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리 보장과 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 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 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 으로써 문화가 사회구성원의 삶의 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 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 목적으로 한다.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개정 취지

- 목적 조항은 이 법의 제정 목적뿐만 아니라 법해석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고 법 의 위상을 결정함
-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문화에 관한 권리, 문화 정책의 목표, 문화권의 주체 등을 명시함으로써 법의 해석과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문화기본법의 목표가 문화권의 보장과 문화의 가치 확산이라는 점을 명시
- 문화기본법의 목표가 사회구성원 전반에 미치도록 함

# 2. 기본이념

현행 개정안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 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한다.
  -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 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 되도록 할 것
  -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 와 같이 문화의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1.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사회구 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 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 식하고 문화권을 증진할 것
- 2. 사회구성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며 문화의 역동성을 높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할 것
- 3.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 별받지 아니하며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문 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 4. 사회구성원이 적절한 휴식을 보장 받고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문화적 참여와 향유를 활성화함으로써 행복한 생활의 기 반을 마련하여 문화적 가치가 확산 되도록 할 것
- 5. 우리 사회의 지역문화가 균형있게 발전하고 재외국민 공동체의 문화 역량을 증진하여 인류의 문화발전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1) 개정 취지

○ 기본이념은 문화법제의 전체를 이끄는 지도원리인 만큼 현행법의 기본이념을 확대하여 개정 법안의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새롭게 구성

#### (2) 주요 내용

- 현행법의 제2조의 기본이념과 제7조의 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의 일부분으로 기본이념 재구성 (제1호~제3호)
- 새로 규정한 기본이념 (제4호와 제5호)
  - 국제인권규약[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제7조 (d)]의 수준에 맞도록 사회구성원이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고 일과 여가의 조화를 전향적으로 규정함
  - 적절한 휴식과 여가의 확보를 통해 문화적 참여와 향유를 활성화함으로써 행복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을 규정

## ○ 제5호

- 지역문화 발전과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를 함께 규정하여 로컬+글로벌 사회에 대응함
- 문화공동체의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여 글로벌 사회 또는 초국적 사회에 대응 하고자 함

# 3. 정의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고유한 정신적 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 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 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 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 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2. "문화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 다.
- 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적 표현을 하며, 문화역량을 향상 시킬 권리
- 나. 문화적 표현활동, 문화 활동 참 여와 문화 향유 등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 다. 문화정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서비스를 받을 권리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여가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 3. "문화역량"이란 문화현상을 이 해하거나 해석하고 수용하며 소통하는 등의 문해력, 타인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공감능력,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과 문화 창조의 잠재력 등을 말한다.

- 4. "문화정책"이란 문화예술진홍과 교육, 문화산업, 언어문화, 문화·여가실, 여가활성화, 독서문화, 인문정신문화, 문화복지, 전통문화, 지역문화, 문화교류, 체육·관광, 미디어 등의 영역에서 문화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산하고 문화권을 증진하며 문화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5. "문화보장"이란 사회적 환경 변화 및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제도와 이를 이용할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공공부조, 문화서비스 등을 말한다.
- 6. "문화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문화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보장 제도를 말한다.
- 7. "문화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 지단체의 책임 하에 문화를 향유할 능력이 없거나 향유하기 어려운 국 민의 최저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제 도를 말한다.
- 8. "문화서비스"란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문화복지, 문화·여가시설제공,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진흥 등의 분야에서 문화권을 보

장하고 사회구성원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9. "문화이용권"이란 특정한 생애주기에 있는 국민, 문화소외계층 또는 재난·위기 상황에 있는 국민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관광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10. "문화자원"이란 역사적·예술적·교육 적·관광적 가치가 큰 문화원형, 전통 문화, 문화유산, 예술작품, 문화상품, 문화콘텐츠, 문화데이터, 문화산업, 문화·여가시설, 관광자원, 역사자료, 영상 등 유·무형의 인간 활동의 산 물을 말한다.

#### (1) 개정 취지

- 개정법안에 사용되는 주요법률용어에 대하여 해석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정의 조항 신설
- 문화기본법에 문화보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관련규정의 정의규정을 두고자 함.
- 문화보장은 문화공공부조·문화서비스·문화안전망으로 이루어지고, 문화이용권은 문화공공부조와 문화서비스·문화안전망의 정책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문화권의 정의
  - 문화권은 현행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라고 규정한 것을 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적 표현을 하며, 문

화역량을 향상시킬 권리"와 나. "문화적 표현활동,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향 유 등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재구성

- 현행 문화기본법이 정하는 문화권이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해 야할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인데 비해 전부개정안에서 새로 추가되는 문화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새로 추가되는 문화권인 다. "문화정책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서비스를 받을 권리" 국민에게 문화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되, 국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문화정책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는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국가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새로 추가되는 문화권인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여가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는 국민이 공적 문화·여가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볼 때 국가가 공적 시설을 제공해야 하므로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국 가의 적정한 자원분배를 고려하여 일단계로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라 하여 모든 국민에게 문화·여가시설을 제공한 것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문화·여가시설 제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동등 접근 권리로 규정

#### ○ 문화역량의 정의

- 문화역량은 국민의 문화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전부개정안에서는 문화권의 보장과 함께 문화역량의 향상이 중요한 정책목표 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용어정의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 문화역량은 네 가지 차원으로 정의되는데 첫째는 "문화현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고 수용하며 소통하는 등의 문해력"으로 일상적으로 문화 리터러시 또는 문화의 이해능력으로 볼 수 있는 문화역량을 말하고, 둘째는 "타인의 문화적표현에 대한 공감능력"으로 문화감수성이라 할 수 있는 문화역량이며, 셋째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로 문화윤리를 의미하는 문화역량이며 넷째는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과 문화 창조의 잠재력"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화역량임.
- 문화역량의 향상이 정책목표라 한다면 이와 같은 문화이해능력, 문화감수성, 문화윤리, 문화활동 능력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 문화보장의 정의

- 사회적 환경 변화 및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문화 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제도와 이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공공부조, 문화서비스 등을 말함
- 문화보장은「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에 상응하는 용어로 헌법 제11조제1

항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용례와 같이 사회적 생활 영역과 구분되는 문화적 생활 영역을 전제로 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4조제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문화 영역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는 헌법적 요청에서 출발함

- 문화보장은 사회적 환경변화 및 생애주기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형태로 보편 적 또는 개별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문화권이 보장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이를 이용할 권 리를 보장하는 문화공공부조, 문화서비스 제도 등을 말함

#### ○ 문화안전망의 정의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문화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보장 제도를 뜻함
- 문화안전망은 문화보장이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할 기본욕 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욕구의 양 측면에서 문화권을 최 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 제도를 말하는데 기본욕구 또는 특수욕구의 충 족이 필요한 개개의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문화보장 제도를 의미함
- 문화안전망은 문화보장이 기본욕구 또는 특수욕구라는 필요성에 대한 최소한 의 보장과 맞춤형이라는 방향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의미

#### ○ 문화공공부조의 정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문화를 향유할 능력이 없거나 향유하기 어려운 국민의 최저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 문화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실시하는 최저문화생활보장 을 의미

#### ○ 문화서비스의 정의

-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 간부문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문화복지, 문화·여가시설제 공,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진흥 등의 분야에서 문화권을 보장하고 사회구성 원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문화서비스는 공적 영역뿐 만아니라 민간영역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으며 문화공공부조 이외의 영역에서 문화권보장과 문화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를 의미

#### ○ 문화이용권의 정의

- 특정한 생애주기에 있는 국민, 문화소외계층 또는 재난·위기상황에 있는 국민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관광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의미함

- 문화이용권 정의는 문화예술진흥법의 정의를 가져왔으며 그 적용범위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소외계층으로 한정한데 비해 문화기본법에서는 지급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이외에 특정한 생애주기에 있는 국민과 재난·위기상황에 있는 국민을 추가하여 문화안전망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문화이용권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규정

#### ○ 문화자원의 정의

- 역사적·예술적·교육적·관광적 가치가 큰 문화원형, 전통문화, 문화유산, 예술작품, 문화상품, 문화콘텐츠, 문화데이터, 문화산업, 문화·여가시설, 관광자원, 역사자료, 영상 등 유·무형의 인간 활동의 산물로 정의함. 문화 분야의 유형 또는 무형의 인간 활동의 산물을 문화자원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이를 문화진흥 기반 조성에 관한 입법용어로 사용하고자 함

#### (3) 유사 입법례

####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 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 4. 국민의 권리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의 권리 등)
THAT/20101 2121) DE 2010 2	①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적 표현을 하며, 문화역량을 향상시킬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② 모든 사회구성원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향유에 있어 차별을 받지아니한다.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문화정책 관련 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문화·여가시설과 프 로그램에 대하여 동등한 접근을 보 장받는다.

## (1) 개정 취지

○ 현행 문화기본법 제4조의 국민의 권리 규정에서 문화권을 자유권과 평등권 중심 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문화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회권으로 문화권을 확장 하기 위하여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접근권 등으로 문화권을 재구성함

- 문화권을 다음과 같이 자유권적 기본권[자유권+평등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사회 권+접근권] 성격으로 구분하여 4가지의 범주로 규정
  -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적 표현을 하며, 문화역량을 향상시킬 권리는 자유권의 성격

-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는 자유권+ 평등권의 성격
- 문화정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사회권 의 성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여가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등 하게 접근할 권리는 사회권+평등권의 성격
- 권리주체의 성격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은 사회구성원의 권리로 구성하고, 제3항 과 제4항은 국민의 권리로 구성함
  - 사회구성원의 권리라는 것은 자유권의 성격을 갖는 권리로서 국적에 관계없이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거주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비해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급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라 할 수 있음

#### (3) 유사 입법례

####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 는다.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행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 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 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 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 사 회적 ·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 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 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 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 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개정안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 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 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 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 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 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 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 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 회적 ·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개정 취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전부개정안의 목적과 내용에 맞추어 문화의 가치

확산, 문화역량 향상, 문화권 보장, 문화의 균형발전, 문화보장으로 재구성

○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은 제6장 문화영향평가로 확대 구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 법의 목적과 연계하여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발전의 토대구축을 위해 문화역량 향상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보장을 규정
  -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제1항)
  - 국민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할 책무(제2항)
  -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할 책무(제5항)
- 국가의 책무로 이 법의 목적과 연계하여 문화권보장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과 재 원확충과 문화발전의 토대구축을 위해 문화의 균형발전을 규정
  -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 할 책무(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제4항

# 6. 국민의 역할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국민의 역할 등)
	①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다양성과 타인의 문화표현을 존중하며, 우리 사회의 문화역량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모든 국민은 문화권의 행사를 통해 문화의 가치가 사회생활 영역 전반
	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1) 개정 취지

- 이 법의 목적인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권 보장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이나 이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해서 국민의 역할을 규정하여 이 법의 목적 구현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회구성원 및 국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무로서 규정하나 사회구성원 및 국민은 책무 또는 의무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법의 목적 구현을 위한 유기적 연계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역할에 대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2) 주요 내용

-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포용성, 문화표현에 대한 상호존중 등의 시민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
- 국민들이 문화권 행사를 통해 권리의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으로서 문화적 가치가 사회에 확산되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문화공동체 유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 「청소년보호법」

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 사람(이하 "친권자등"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려고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 ② 친권자등은 제1항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과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 등 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 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현행 개정안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 ②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 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 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할 때에 다른 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따른다.

#### (1) 개정 취지

- 법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 이 법과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
- 현행법이 정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전부개정 법안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을 유지

- 문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이 기본법의 위상에 있음을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에 있어 원칙적으로 이 법에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

# 8. 문화의 가치 확산의 원칙

현행	개정안
	제2장 문화의 가치 확산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한다.	제8조(문화의 가치 확산의 원칙)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 히 고려하여야 한다.
	<ol> <li>사회구성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li> <li>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li> <li>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li> </ol>
	<ol> <li>문화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서비 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하 여 차별 없는 문화보장이 증진되도</li> </ol>
<ul><li>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li><li>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li><li>할 것</li></ul>	록 할 것  3.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되, 미 래세대에게 문화유산으로 전달될
<ul><li>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li><li>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li></ul>	수 있도록 할 것  4. 문화서비스의 제공과 문화역량의 향상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 되, 지역 간의 차별 없이 균형적인 문화발전이 이루어지게 할 것
	5. 우리 문화의 가치 확산이 인류문 화의 보편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6. 남북 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 사회의 문화 정체성이 형 성되도록 할 것

# (1) 개정 취지

○ 제2장은 문화의 가치 확산의 기반이 되는 규정들을 중심으로 편제함에 따라 제2

장의 제목을 "문화의 가치 확산"으로 하고 첫 조문으로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현행 규정을 보완함

- 국민의 문화역량 증진 및 국가의 문화안전망구축을 통한 문화서비스의 단계적 확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규정임
- 문화 가치 확산 원칙 등을 문화 관련 법률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원칙들을 명문 화(明文化) 함
- 이 규정은 국가 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선언하는 것으로 문화기본법 규정들의 해석 및 집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해석에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 주요 내용

- 문화역량 및 문화안전망 개념을 법문에 명시하여 문화를 통하여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도록 할 것
- 문화의 특성상 주체를 국민에게 한정하지 않고 문화정책에서 팔길이 원칙을 존 중하며 문화역량의 지원 여건 조성을 명시함
- 문화기본법의 패러다임 전환 차원에서 문화안전망, 문화서비스 확대, 차별없는 문화보장의 증진 등을 규정함
- 전통문화로서 문화유산이 미래세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치가 뛰어 난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서비스의 제공과 문화역량의 향상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역 간의 차별 없이 균형적인 문화발전이 이루어지게 함
-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이 국수주의적 경향을 띠지 않고 인류문화의 보편적인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남북분단으로 인한 민족 간 문화공동체의 붕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남북 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 사회의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도록 할 것을 명시함

#### (3) 유사 입법례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

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경관법」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 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 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9. 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현행

-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 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 수립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 보 방향
    -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 7. 문화 · 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9. 문화정책 관련 조사 · 연구와 개 발에 관한 사항

#### 개정안

#### 제9조(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 ① 국가는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문화전 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으로부터 소관 영역의 문화적 가치 의 확산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문화 정책의 기본방향
    - 2.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문화권의 증진에 관한 사항
    - 4.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여가생활 보장을 위한 시책에 관 한 사항
    - 5. 직장문화, 시민문화, 안전문화 등 중앙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문 화적 가치 확산 정책에 관한 사 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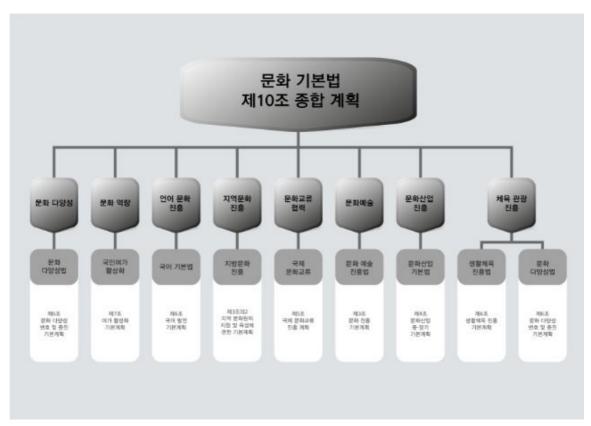
-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 6.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와 관련한 문화정책에 관한 사항
- 7. 문화보장과 문화서비스의 확대, 문화안전망 구축 등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 8.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 9.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0.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 11.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12. 그밖에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 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그밖에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 각종 행정계획들이 산재해 있고, 행정계획 수 립 시기들이 일치하지 않아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기도 함
- 문화정책의 종합적 마련을 위해 문화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법령의 각종 기본계획들은 문화진흥 종합계획과 체계적 정합성이 있도록 함
- 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의 주요 절차를 규정함
- 문화진흥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규정함

- 국가는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종합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4조제 1항에 따른 국가문화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함
  - 문화진흥 종합계획은 국가의 중장기 문화적 비전을 마련하고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문화전략회의의 심 의를 거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을 △문화다양성 △문화역량 △언어문화진흥 △지역문 화진흥 △문화교류·협력 △문화예술 △문화·여가시설 △문화산업 진흥 △체육·관 광 진흥 등으로 갈무리, 각 부문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법률상 행정계획과 종합 계획의 부합
- 문화진흥 종합계획에는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등 문화진흥의 전략과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포함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령상 수립되어야 할 행정계획들과 정합성 있도록 각 문화진흥 정책들의 사항이체계적으로 포함되도록함



[그림 4-1] 문화진흥 종합계획 구조

#### (3) 유사 입법례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 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 · 융합연구개발 촉진
  -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 7. 기초연구의 진흥
  -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 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 계획에 따라야 한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2. 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 3.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 4. 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 5. 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6. 위법하게 제작·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지도·단속
  - 7.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 8. 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 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 ·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

- 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확정한다.
- ③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 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 가. 생물다양성·생태계·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 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①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 행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10. 문화진흥 관련계획의 수립

현행	개정안 제10조(문화진흥 관련계획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진흥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주기는 이 법의 시행이후 최초의 종합계획 수립 시기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진흥 관련 계획 은 종합계획 수립 이후 6월내에 수 립한다.

#### (1) 개정 취지

- 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진흥 관련계획들은 종합계획 수립과 체계적 정합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통일성, 일관성 등을 갖게 하고 행정의 효율을 도모 합
- 非법정계획, 법령상 주기 미규정계획, 계획 수립 주기 불일치 계획 등의 수립주 기 조정
- 시행령 위임 및 개정을 통한 부문별 세부 계획 수립주기 연동 및 순차 수립 방 안의 강행 규정화
-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게 함으로써 체계 정합성을 갖추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진흥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주기는 이 법의 시행이후 최초의 종합계획 수립 시기로부터 기산하도록 함
- 문화진흥 관련 계획은 종합계획 수립 이후 6월내에 수립하도록 명시함

#### (3) 유사 입법례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 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 계획에 따라야 한다.

#### ※「국토기본법」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 ①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 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②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 ※「건축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

- 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 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 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 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 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 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 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시행계획의 경우 기본계획을 분야별·연도/연차별·단계별 등으로 구분하여 실 현해 나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으로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는 주체가 시행계획을 함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문화진흥 종합계획의 포괄성과 범부처성을 반영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문화기본법의 규정을 대체로 유지함

#### (2) 주요 내용

- 문화진흥 종합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도 각 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문화적 영역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 문화진흥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조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연도별 시행 계획)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

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 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국회 보고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	제12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
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	관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
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	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개정 취지

- 일반적으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 이를 국회,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 기관이나 국무회의, 국무총리 등 정부 내부의 상급 기관에 보고·통보하여 정책의 방향, 내용 및 변경사항을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통보의 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함께 규정함
- 보고·통보의 대상으로는 국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무회의, 국무총리, 자문위원회 등 관련 기관 등이 있는데, 현행 규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시기는 사유 발생후 지체 없이로 함
- 현행 문화기본법의 규정을 대체로 유지함

# (2)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 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양성평등기본법」

제53조(국회 보고)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매년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2(국회 보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 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기본법」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 5. 건축제도 · 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 6. 건축기술 · 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 13. 지역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현행	개정안
	제13조(지역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 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5 년 마다 시·도 문화진흥종합계획 (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5년 마다 시·군·구 문화진흥종합계획(이하 "시·군·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있다.
<신설>	③ 시·도지사가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진흥 관련 계획에 따른 지역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시·도 종합계획 또는시·군·구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시·도 종합계획 또는 시· 군·구 종합계획 및 이에 따른 추 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도 종합계획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군·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구 종합계획을 수립을 재량에 따라 하도록 함
- 수립주기 불일치 등에 따른 유사 행정계획 수립 의무 반복 부과 등 비효율적 요 소를 제거하고자 함
- 지자체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지역계획 또는 연도 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제함
- 중복·유사 행정계획 난립 방지를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정책 통일성 확보
-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함

# (2) 주요 내용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5년 마다 시·도 문화진흥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 록 권한을 부여함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은(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종 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5년 마다 시·군·구 문화진흥종합계획(이하 "시·군·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진흥 종합계획 시·도 종합계획 시·군·구 종합계획이 체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가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진흥 관련 계획에 따른 지역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경우도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수립이 의제되는 지역계획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이 이루어져 온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기존과 같이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단서에 이 법에 따른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진흥 관련 계획에 따른 지역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 획의 하나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규정하는 경우는 본문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을 의제할 수도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종합계획 또는 시·군·구 종합계획 및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실행 정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차기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종합계획 또는 시·군·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도건축정책위 원회 또는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 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시·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 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시 · 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 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계획(이하 "시·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삭제**
- ④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시·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 의 권역(圏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 1. 주거환경의 개선
  -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 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4. 국가문화전략회의의 설치

현행	개정안
	제14조(국가문화전략회의의 설치)
	① 문화의 가치 확산 및 문화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문화전략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된 문화진흥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 항
	3. 문화진흥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② 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 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 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 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 교통부장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 하는 사람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회의의 간사로 한다.
- ⑤ 간사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를 운영할 수있다.
- ⑥ 회의는 문화의 가치 확산 및 문화 진흥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① 그 밖에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1) 개정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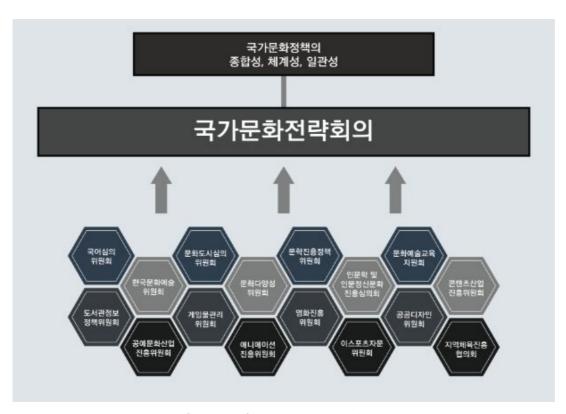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 상 설립된 위원회는 총 42개 위원회로 의사결정 단계 다층화에 따른 정책 효율성 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 발생
- 의사결정 구조 단순화를 통한 체계적·통합적 정책 심의 및 자문을 위한 협의체 마련
- 국가문화전략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문화 정책의 종합성·체계성 및 일관성 확대 가 기대됨

# (2) 주요 내용

- 문화의 가치 확산 및 문화진흥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국 가문화전략회의를 설치함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문화진흥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진흥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회의의 구성원은 문화 정책 관련 주요 부처 장관급을 중심으로 하되 관련 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거나 문화정책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대통령이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간사를 담당함
- 국가문화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회의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 도록 함
- 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그림 4-2] 국가문화전략회의 구조

# (3) 유사 입법례

#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 ①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회의(이하 "교육회의"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 2.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 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 3.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및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 4.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5.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및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 6.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분배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8. 일자리 관련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등에 관한 사항
- 9. 인문·소양 교육의 확대 및 평생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0.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
- 11.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등에 관한 사항
- 12.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및 산학연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13. 국가교육관리체제 개편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교육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교육회의의 구성)

- ① 교육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교육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 2. 대통령비서실의 교육 관련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
  - 4.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1명은 제4조에 따른 임기 동안 상근한다.

# ※「유아교육법」

####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 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사업의 기획·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 부에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두고, 시·도 교육청에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대표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③ 중앙유아교육위원회와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③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기 관 소속으로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관광기본법」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지역문화전략회의의 설치

현행	개정안
	제15조(지역문화전략회의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문화의 가치 확산 및 지역문 화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전략 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1. 시·도 종합계획 또는 시·군· 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문화진 흥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진흥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또는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그밖에 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다.
	⑤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지역 문화협력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전략회의를 설

치한 것으로 본다.

# (1) 개정 취지

- 국가문화전략회의의 추진체계를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문 화전략회의에 관해 규정함
- 지역문화전략회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음

# (2) 주요 내용

-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문화의 가치 확산 및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전략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지역문화전략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시·도 종합계획 또는 시·군·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문화진흥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진흥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지역문화전략회의의 구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되,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지역문화전략회의의 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또는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의 취지에 따라 지역문화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그 성격과 구성이 지역문화 전략회의와 유사한 바, 시·도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이 적 절하지 아니하므로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전략회의를 설치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지방행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건축기본법」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 ① 지역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건축정책위원회(이하 "광역건축위원회"라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건축정책위원회(이하 "기초건축위원회"라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광역건축위원회 및 기초건축위원회(이하 "지역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조직,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문화진흥 재정추계

현행	개정안
	<b>제16조(문화진흥 재정추계)</b> 국가는 문
	화정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문화진흥 재정추계를 5년마
	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
	다.

# (1) 개정 취지

○ 문화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중장기 문화보장 재정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함으로서 국가는 문화보장제 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음

# (3) 유사 입법례

# ※「사회보장기본법」

-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제32조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및 분석에 관한 업무 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교육기본법」

제7조(교육재정)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7. 문화역량

현행 개정안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7조(문화역량) 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다 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 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구 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성원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권의 욧 증진과 문화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근로시간의 단축, 휴일의 확보 등 사회구성원의 여가를 보장하고 체 3. 문화예술의 진흥 육 · 관광의 진흥 등을 통한 여가활 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문화산업의 진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역량강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화를 위해 독서문화와 인문정신문 6. 문화복지의 증진 화를 진흥하고 문화예술교육 및 문 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7. 여가문화의 활성화 마련하여야 한다.

# (1) 개정 취지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 문화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기본법-개별법관계를 명문화

④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여가활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성화, 독서문화와 인문정신문화 진 흥,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후원에

- 기본법에 국가가 추구해야할 미래지향적 가치로서 문화가치확산과 각 부문별 문 화진흥방안을 명시함
- 문화관련 각 부문에 기본법상의 이념과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문화권 증진과 사회적 문화역량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임 명시
- 문화가치확산과 문화역량증진을 위해 △문화다양성 △문화역량△언어문화진흥

△지역문화진흥 △문화교류·협력 △문화예술 △문화·여가시설 △문화산업 진흥 △체육·관광 진흥 분야별로 개별 조문을 구성해 문화정책 추진의 기본틀 마련

- 현행 문화기본법 제9조의 내용을 개정안의 제17조에서 제21조로 재구조화함
  - 제17조 문화역량에 관한 규정
  - 제18조 문화교류에 관한 규정
  - 제19조 언어문화진흥에 관한 규정
  - 제20조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규정
  - 제21조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
- 일괄개정법을 통한 여가활성화기본법의 목적조항(제1조) 개정 및 문화기본법 종 합계획에 따른 중장기 정책 수립 의무 명시

# (2) 주요 내용

- 문화역량 규정에서는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 보장, 문화역량 증진을 최우선 과 제로 함
- 문화권 증진과 문화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여가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의 단축, 휴일의 확보 등 사회구성원의 여가를 보장"을 명시하고, 나아가 "체육·관광의 진흥 등을 통한 여가활성화" 노력을 강조함
  - 근로시간의 단축, 휴일의 확보 등은 문화권에 직결되는 것으로 여가 보장을 위한 간접적 방식으로 규정함
  - 체육 및 관광에 관한 직접적 근거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으나, 체육과 관광 역
     시 여가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므로 간접적 방식으로 규정함
  - 문화권 실질화를위한 사회구성원의 여가 보장 필요성 명문화. 근로시간의 단축, 휴일의 확보 등 여가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문화기본법과 여가활성화기본법의 위계 정립 및 정책수립의 일관성 확보
- 문화역량강화를 위해 독서문화와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문화예술교육 및 문 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여가활성화, 독서문화와 인문정신문화 진흥,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후원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

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독서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 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8. 문화교류

# 현행 개정안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 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제18조(문화교류) 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 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 치 확산과 우리 사회의 문화역량 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제고를 위하여 문화교류와 협력을 다. 증진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 ·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나라 욧 와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문화예술의 진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문화 분야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4. 문화산업의 진흥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한 간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6. 문화복지의 증진 ④ 국가는 국제 및 남북한 문화교류 7. 여가문화의 활성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 리 ·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여야 한다.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⑤ 국제문화교류 및 남북한 문화협력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 (1) 개정 취지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 문화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기본법-개별법관계를 명문화하며 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및 남북협력 시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

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 주요 내용

○ 국가문화역량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른 나라와의 문화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남북한 간 문화 분야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규정

- 국가에게 국제 및 남북한 문화교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
- 국제문화교류 및 남북한 문화협력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 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 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 다
-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19. 언어문화진흥

현행	개정안 제19조(언어문화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자 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알기 쉬운 한국어를 사용하여 국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b>〈</b> 신설〉	② 국가는 수어, 점자, 외국어 등 다양한 방식의 언어정책을 통해 언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의 보급에 관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③ 언어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현행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2호에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안에서 언어문화진흥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
- 언어문화는 공동체 유지 발전과 정체성 제고, 문화전달의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서도 하나의 분야를 이루고 있어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함
- 다문화사회 도래 및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독립 규정 마련이 필요함

# (2) 주요 내용

- 국어, 수어, 점자 등 언어 문화 진흥을 국가 문화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명시
  - 국가는 수어, 점자, 외국어 등 다양한 방식의 언어정책을 통해 언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보급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점을 명시
- 언어문화 진흥 부문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국어기본법과의 체계정합성 확보

○ 일괄개정 법률을 통해 국어기본법 목적 조항에 "문화기본법 제19조에 따라서"를 명시하고, 문화기본법 종합계획에 따라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정함

# (3) 유사 입법례

# ※「국어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 전통문화와 문화유산

현행	개정안 제20조(전통문화와 지역문화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계승 및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 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ビビ/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 화의 진흥을 위해 지역 문화 인력 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정책수 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보전·활용 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현행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1호에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제10호에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어이를 전통문화와 지역문화로 통합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계승 노력,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국가적 책무 등을 기본법에 명시함
-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보전 등과 관련 기본법 역할을 하는 「문화재보호법」과 문화기본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함
- 지역문화 진에 기본법 역할을 하는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과의 체계 정 합성을 확보함
-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일괄개정법을 통해 지역문

화진흥계획을 문화기본법상 종합계획에 부합하도록 함

- 문화재 보호 정책 수립 시에는 기본법의 종합계획에 따르도록 함

# (2)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계승 및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여 야 할 의무를 명시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들의 문화권 향유가 지역적 차별 없이 가능하 도록, 지역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 키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의 진흥이 지역에 기반한 지역 문화 인력의 역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문화 인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정책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보전·활용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문화기본법과 문화재보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개별 법률과 의 관계를 명확히 함

# (3) 유사 입법례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1.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

현행	개정안 제21조(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하며, 문화상품 및 콘텐츠의 제작·개발·유통 등을 육성·지원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창작물의 유통 활성화 를 위해 저작권 보장 정책을 시행 하여야 한다.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복지 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를 통한 문화의 가치 확산과 미디어 영역에서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 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 다.
	⑤ 문화예술의 진흥, 예술인복지,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저작권의 보장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현행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제3호 문화 예술의 진흥, 제4호 문화산업의 진흥 등을 아래와 같이 재구조화 함
  - 문화예술의 진흥
  - 문화상품 및 콘텐츠 정책
  - 창작자의 권리 보장 등 저작권 정책

- 문화예술교육화
- 예술인복지
- 미디어 정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과 창작의 자유 보장 책무 명문화 및 구체 적 시책 마련 의무 부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상품 콘텐츠의 제작·개발·유통지원책무 명시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선언함
-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과 이에 관해 법률을 둘 것을 명시함
- 문화산업 진흥의 전제 조건으로 '저작권' 보호를 명시하고, 저작권법이 문화기 본법의 하위 법률임을 명확히 함
- 미디어 시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문화 가치 확산, 문화의 다양 성 및 자율성 제고)
- 문화기본법과「문화예술 진흥법」,「문화예술 교육지원법」,「예술인 복지법」,「문화산업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등과의 체계정합성 확보

#### (2) 주요 내용

-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하며, 문화상품 및 콘텐츠의 제작·개발·유통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할 의무를 부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창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 작권 보장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를 통한 문화의 가치 확산과 미디어 영역에서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예술인복지,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저작권의 보장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분야 개별 법률과 문화기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3) 유사 입법례

#### ※「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예술인 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2. 문화보장의 원칙

현행	개정안 제3장 문화보장과 문화서비스
	제22조(문화보장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문화보장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보장의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며, 문화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문화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보장 제 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 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 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효 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 한 문화적 요구를 효율적으로 충족 시키기 위하여 문화보장제도 간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문화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문화서비스 제공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개정 취지

- 문화보장의 필요성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문화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노동에 대한 가치관 변화, 신기술의 발달과 문화상품의 다양화, 사회풍조의 변화 등 4차 산업시대의 인간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문화적 삶의 질 중요시하는 인식의 근본적 변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문화보장이 필요함
- 문화기본법이 문화보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기본원칙을 천명함

# (2) 주요 내용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보장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용
  - 문화보장의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며 각각의 문화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 어야 함
  - 문화보장 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효과 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문화보장제도 간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함
  - 문화서비스 제공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3) 유사 입법례

#### ※ 「사회보장기본법」

-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 ※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 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 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 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
- 8. 저출산·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 23. 문화안전망의 구축 및 운영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문화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의 생애주기동안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문화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문화소외계층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안전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안전망 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 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1) 개정 취지

- "문화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문화권을 최소한 으로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보장제도임
  -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평생사회안전망 개념을 고려하였음. 평생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 형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함

# (2) 주요 내용

○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동안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문화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함

- 문화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공부조 등 최소한 의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안전 망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안전망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함

# (3) 유사 입법례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 · 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 24. 문화공공부조사업

현행	개정안
	제24조(문화공공부조사업)
〈신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공공부 조사업을 시행하여 경제적 환경 변 화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처해 있 는 문화소외계층에 대하여 최소한 의 문화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문화적 삶의 질을 확보하고 자립하 는데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문화공공부조사업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③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을 위한 문화공공부 조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한다.

# (1) 개정 취지

- 문화소외계층이 문화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문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문화공공부조는 문화보장제도의 하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문화를 향유할 능력이 없거나 향유하기 어려운 국민의 최저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함

# (2)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공공부조사업을 시행하여 경제적 환경 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처한 문화소외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문화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한 문화공공부조사업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문화공공부조사업 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3) 유사 입법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소득 보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 도록 하여야 한다.

####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 독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 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주거약자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비용의 부담)

③ 공공부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25. 문화서비스

현행	개정안 제25조(문화서비스)
<신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 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문화서비스에 관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서비스 보장이 문화공공부조 및 문화안전 망과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서비스 가 차별 없이 제공되며 모든 국민 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적시에 제 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맞춰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문화서비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고 문화서비스의 단계적 확 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⑥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문화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 개정 취지

○ 문화서비스는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문화복지, 문화·여가시설제공, 예술교육, 문화산업진흥 등의 분야에서 문화권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 (2)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문화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서비스 보장이 문화공공부조 및 문화안전망과 효과 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며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 할 수 있고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함
- 국가는 문화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고 문화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정책을 시행하여야 함
- 문화서비스의 기준과 단계적 확대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따로 정함
-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문화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3) 유사 입법례

#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비용의 부담)

④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26. 문화이용권

현행	개정안
	제26조(문화이용권)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 나 지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 또는 재난 또는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 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 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그밖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재난 또는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 재난 또는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지급할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 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을 지정할 수 있음

## (3) 유사 입법례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 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 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 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6 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 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 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

- 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7. 민간의 참여와 협력

현행	개정안
	제27조(민간의 참여와 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유 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 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유 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문화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 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문화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개정 취지

○ 문화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문화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 그 밖에 문화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3) 유사 입법례

####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민간의 참여)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28.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현행	개정안
	제4장 문화진흥 기반의 조성
	제28조(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진흥, 문화보장, 문화서비스 제공, 문화 · 여가시설 운영 등에 관한 문화 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 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의 직종 또는 업종의 분류체계를 마련 하여야 한다.

# (1) 개정 취지

- 문화전문인력은 문화진흥을 위한 인적 기반이 됨
- 현행 문화기본법상 문화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미와 주요 정책이 불분명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 인력은 그 의미와 내용, 업무 영역이 다소 불명 확하여 이를 '문화 전문인력'으로 개칭하고, 활동 분야를 문화진흥, 문화보장, 문 화서비스 제공, 문화·여가시설 운영 등으로 명확히 규정함
- 교육을 구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구는 개정안 제39조 에 별도로 규정함

- 문화전문인력 활동 분야를 문화진흥, 문화보장, 문화서비스 제공, 문화·여가시설 운영 등으로 명확히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및 시책 추진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가치 확산 및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은 현행 유지
- 문화 전문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직종 또는 분류체계 마련을 장관에게 부담시킴

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인력에 대한 규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국가표준기본법」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①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 2.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② 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 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전문 인력의 양성)

- ①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이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를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9. 국립문화인재개발원

현행	개정안
〈신설〉	<b>제29조(국립문화인재개발원)</b> ① 다음 각 호의 문화 인력의 교육·훈

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으로 국립문화인재개발원(이하"인재 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 관련 특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문화진흥업무를 위한 공공기관 임 직원
- 3. 문화 · 여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 4. 제28조제1항의 문화전문인력
- ② 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항 각호의 문화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2. 문화진흥을 위한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문화인력 개발에 관한 조사 및 연 구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인재개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 되, 문화진흥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이 임면한다.
- ④ 인재개발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문화·여가시설의 공 무원과 문화진흥업무를 위한 지방공

기업 및 지방출연·출자기관 임직원 의 교육·훈련을 인재개발원에 위탁 할 수 있다. ⑥ 그밖에 인재개발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인재개발원이 필요함
- 국립문화인재개발원의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직무를 규정
- 다른 부처의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인재개발원'은 주로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나, 이 법안에서 규정한 인재개발원은 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것임
  - 문화담당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 교육기관 부재에 따른 문화분야 전문교육훈련기관 설립이 필요함
  - 공공부문에서 양성된 현장 활동가와 같은 문화 전문인력의 경우, 사후 관리 체계가 부재
  - 현장인력의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실질적 요구 또한 높은 수준임
-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서 외교부장관 소속의 국립외교원, 독립기구로서 한국고용 노동교육원,「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상의 '전통문화교육원' 등을 들 수 있 음

- 인재개발원은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립으로 설치함
- 국립문화인재개발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관련 특수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휴련
  - 문화진흥업무를 위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문화·여가시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제28조제1항의 문화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문화진흥을 위한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문화인력 개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인재개발원에 문화인재개발원 원장을 두도록 하며, 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

- 원장은 인재개발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인재개발원은 국립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국립외교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설립하여 노사관계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고 고용노동 관련업무 종사자의 전문성 및 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 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전통문화교육원)

-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원을 둔다.
-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 ④ 제3항의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은 국민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운영하여 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 ⑤ 전통문화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①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원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한다.
-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 다. 그 밖에 외국공무원 등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 가. 공직가치 · 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
  - 나.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 다.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기반 마련
-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 2.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 3. 어업인후계자의 특별교육

# 30.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와 개발)

현행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연구를 시 햇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 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 전문적으로 조사 · 연구 · 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 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0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와 개발)

개정안

- 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① 국가는 문화정책 수립을 효과적으 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문화생 활에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문화 통계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다.
- 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 2 국가는 문화기술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업 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 다.

#### (1) 개정 취지

- 현행 문화기본법 제11조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유지
- 문화생활 실태조사 실시 외에 문화통계 개발을 추가함
- 미래사회 문화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통계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통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얻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행정 및 각종 복지 자료를 통해 얻을 수도 있으며 정보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통계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임
- 문화정책의 전담기관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법정기구로 있다는 점에서 연구와 개발의 분야를 달리하는 것으로 개정함

## (2) 주요 내용

- 문화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문화생활 실태조사와 문화통계 개발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
- 실태조사와 개발된 문화통계는 공표를 함으로써 문화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향유 지표가 상승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정보 관련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함
- 문화통계는 문화복지, 문화·여가시설,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전담기관 지정 운영을 유지하되 전담기관의 역할 범위를 '문화기술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확산'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제31조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차별화하 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영상진흥기본법」

제8조 (조사·연구·개발 및 보급) 정부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물관리기본법」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제21조의2(산림병해충의 조사 · 연구 및 기술개발 등)

-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
-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결과를 전국 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대상 및 방법, 방제기술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57조(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3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섴

#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립)

현행

-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 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 성을 위한 조사·연구
  -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 · 평가 · 연구
  -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 · 연구
  -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 류 및 연구협력사업
  -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

# 제31조(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 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

개정안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 구
  -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 한 조사·연구
  -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 · 연구
  -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 류 및 연구협력사업
  -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

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 9. 조사 · 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 스

- 9. 조사 · 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삭제〉

##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 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삭제〉

# (1) 개정 취지

- 현행 문화기본법 제11조의2 규정 존속 및 수정 보완
- 제7항은 규제 완화 및 유사 입법례의 취지에 따라 삭제함

- 연구원은 법정법인으로 함
- 연구원의 운영은 정관에 의하도록 함
- 정부는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 연구원의 사업 범위는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

석·서비스 9.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등으로 조사·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협력 사업과 정보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

- 불필요한 규제적 요소(유사명칭 사용 금지)는 삭제
- 현행 문화기본법 제13조의2(과태료) 규정 삭제

## (3) 유사 입법례

#### ※「발명진흥법」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 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 4.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 과의 공동연구
  -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 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⑤ (하략)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2. 문화의 달·날

#### 개정안 현행 제12조(문화행사)

-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① 사회구성원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 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사회구성원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 가 있는 날을 지정 · 운영할 수 있 다.
-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 화가 있는 날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문화의 달·날)

-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 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 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 화가 있는 날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현행 문화기본법 제12조 문화행사의 내용을 유지하되, 유사입법례의 조의 표제 규정 방식을 반영하여 제목을 "문화의 달·날"로 함
- 향유 주체를 국민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확대함

- 문화행사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조의 제목을 규정 취지에 맞도록 "문화의 달·날"로 개정함
-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주체는 국민에게 한정할 수 없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 령의 각종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회구성원으로 확대함
- 제1항의 문화의 달, 문화의 날 이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문화가 있 는 날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유지함
-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 임함

## (3) 유사 입법례

####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 ③ 삭제
-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 ① 정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한다.
- ② 문화다양성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 33.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제33조(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자원이 발굴되거나 활용되어 문화역량 증
진과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문화자원의 발굴·활용 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 (1) 개정 취지

- 문화진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중요한 과제
-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화자원의 개념을 법제화
- 문화자원이란 문화진흥의 기반이 되거나 문화향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문화 가 향유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것으로 보호하고 향유하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 문화자원은 문화콘텐츠에 한하지 않고 문화원형, 문화 창조의 결과물, 문화 향유 의 대상을 정책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자원의 개념을 제2조의 정의조항에서 역사적·예술적·교육적·관광적 가치가 큰 문화원형, 전통문화, 문화유산, 예술작품, 문화상품, 문화콘텐츠, 문화데이터, 문화산업, 문화·여가시설, 관광자원, 역사자료, 영상 등으로 규정
- 문화자원이 발굴되거나 활용되어 문화역량 증진과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도 록 시책 마련 의무 규정
- 문화자원의 유형에 대한 각각의 의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구체화될 수 있음
  - 문화원형: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의2(지역문화 고유원형 보존 지원)에서는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유산: 가.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 문화상품은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 「문화산업진흥법」에서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 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고, "문 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함
- 문화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문화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 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산업: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문화·여가시설:「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국 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가시설
- 영상: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 (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 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함
- 문화자원 발굴과 활용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규정 마련

#### (3) 유사 입법례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육성)

-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사업화
  - 2. 성장동력 분야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육성
  - 3. 성장동력 분야별 일자리 및 시장창출 방안
  - 4. 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규정의 개선
  - 5. 그 밖에 성장동력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34. 문화경관의 연계관리

현행	개정안
	제34조(문화경관의 연계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진흥을 위해 특정 지역 의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관광
〈신설〉	자원·주민의 생활상 등을 문화경 관으로 연계·관리하기 위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경관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개정 취지

- 문화적 환경 및 경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각종 문화경 관이 비체계적으로 관리됨
- 문화경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 (2) 주요 내용

- 문화자원의 맥락 속에서 문화유산, 자연환경, 관광자원, 주민의 생활상 등은 하나의 총체적 문화를 반영하게 되므로 관련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점으로 보호되고 향유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면으로 보호하고 향유하 기 위해 문화경관으로 연계하고자 함
- 지역의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관광자원·주민의 생활상 등을 문화경관으로 규정
- 문화경관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규정

# (3) 유사 입법례

#### ※「경관법」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

다.

- 1.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 2.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 3.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 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4.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5.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있는 요소를 갖도록 유도할 것
- 6.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

#### ※「농어촌정비법」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 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관리기본법」

제13조(협력과 연계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유역 전체를 고려하여야 하며, 어느 한 지역의 물관리 여건 변화가 다른 지역의 물순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유역·지역 간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 35. 문화·여가시설의 조성·운영

현행	개정안
	제35조(문화·여가시설의 조성·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조성 한 문화·여가시설은 문화권 보장 을 위하여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여가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있다.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역량 증진을 위해 문화·여가·체육·관광등을 위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문화·여가시설단지를 조성·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문화향유와체험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문화·여기시설의 범위, 제 2항의 민간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제3항의 문화·여가시설단 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이 규정은 문화, 여가, 체육, 관광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반영 하고자 한 것임
- 문화·여가시설의 설치 취지로서 문화권 보장을 강조하고 문화권의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차별없는 접근을 원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 지역주민이 문화향유와 체험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효율적 관리 도모

#### (2)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조성한 문화·여가시설은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평등한 접 근권을 강조함
- 민간의 문화·여가시설 설치와 운영을 권장함으로써 문화권 보장과 해당 시설에 대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역량 증진을 위해 문화·여가·체육·관광 등을 위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문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주민이 문화향유와 체험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체험에 대한 접근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 되고 문화의 특성상 다양하고 통합된 향유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 제1항의 문화·여기시설의 범위, 제2항의 민간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제3 항의 문화·여가시설단지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함
- 그 외에 법률에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국가가 조성한 복합문화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운영·관리 기구를 둘 것이 권장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복합문화단지는 조례로 통합 운영될 수 있을 것임

#### (3) 유사 입법례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수 있다.

-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 4. 제11조에 따른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
  - 5. 재원조달계획
  - 6. 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36. 문화정보화 시책

현행	개정안
	제36조(문화정보화 시책)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보화를 통한 문화권 보장과 문화의 가치 확산 및 문화진흥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정책, 문화통계, 문화보장, 문화향유, 문화·여가시설, 문화 프로그램 등의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 업무를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개정 취지

- 문화권 보장, 문화의 가치 확산 및 문화진흥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 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 등의 문화정보화가 중요함
- 문화정보화를 통한 문화권 보장, 문화의 가치 확산, 문화진흥 업무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규정함
- 문화정보화 시책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전담기관 지정 의 근거 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보화를 통한 문화권 보장, 문화의 가치 확산 및 문화진흥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정책, 문화통계, 문화보장, 문화향유, 문화·여가시설, 문화 프로그램 등의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함

- 정보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할 정보는 문화정책, 문화통계, 문화보 장, 문화향유, 문화·여가시설, 문화 프로그램 등의 관련 정보임
-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문화진흥, 문화향유 정책 추진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 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문화예술진흥법」제41조의2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특법에 따른 문화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권한을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교통안전법」

제52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 ①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안전과 관련된 제반 교통 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통합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교 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공유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산림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현황
  - 2. 산림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정보
  - 3. 산림기술자의 경력 등 관련 정보
  - 4.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현황
  - 5. 산림기술용역 및 산림사업시행 실적 등 관련 정보
  - 6. 산림사업시행업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7.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 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25조(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 · 운영)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정보체계(이하 "자원순환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주거기본법」

제23조(주거복지정보체계)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 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의 주거복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현행	개정안
	제37조(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신설〉	① 문화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진흥 업무의 지능화·고도화 기반 의 마련을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제도·기술의 조사·연구·개발
	2.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지 원
	3. 문화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통계관 리
	4. 문화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기반 조성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7. 문화정보화 관련 교류·협력 사업
	8.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의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개정 취지

- 문화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문화진흥업무의 지능화·고도화의 기반마련을 위한 한 국문화정보원 설립 근거 규정
- 한국문화정보원은 법정특수법인으로 설립

# (2) 주요 내용

- 정보원은 법정법인으로 함
- 정보원의 운영은 정관에 의하도록 하며 정관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두도록 함
- 정부는 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 정보원의 사업 범위는 "1.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제도·기술의 조사·연구·개발, 2.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지원, 3. 문화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통계관리, 4. 문화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기반 조성,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7. 문화정보화 관련 교류·협력 사업, 8.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등으로 하여 문화정보화 사업추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 (3) 유사 입법례

#### ※「고용정책기본법」

####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 · 관리
  -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 3. 고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개발 및 보급
  -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하략)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 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다.
  -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기능개선·관리·교육·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이용·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 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 · 단체 · 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분석, 제공과 사회보장 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 7.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하략)

# 38.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 원 등)	제5장 문화재정기반 제38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
<ol> <li>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li> <li>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 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 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ol>	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후원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개정 취지

○ 현행 문화기본법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는 유지

## (2) 주요 내용

- 문화 진흥 사업의 경우 민간 영역의 자율적 발전이 우선이겠으나, 이른바 팔길 이원칙 또는 중립성 원칙에 입각하여 문화 영역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여전히 필요하고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이외에 민간의 재원 조성과 후원문화의 활성 화가 사회 영역의 자율적인 문화발전과 창조성 발현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기부 대신 후원으로 변경함
-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가 문화예술단체에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 도록 기반을 조성해 줄 필요가 큼

## (3) 유사 입법례

#### ※「건축기본법」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 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

-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 2.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 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5조(재정 등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금융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9. 문화자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현행	개정안
	제39조(문화자산특별회계의 설치·운
	영)
	① 국가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국가보 유 문화재, 정부미술품, 국립박물 관·미술관 소장품, 문화·여가시설 등의 문화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문화자산특별회계(이하 "특 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금액과 같다.
	1. 국가보유 문화재
〈신설〉	2. 국립박물관 소장품
	3. 국립미술관 소장품과 정부미술품
	4. 문화·여가시설
	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 증가금액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 가감소 금액
	2. 국가 아닌 자에게 매각된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액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자산의 가치

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자산에 관한 특
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 (1) 개정 취지

○ 국가보유 문화자원 중에서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정부미술품, 국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문화·여가시설 등의 문화자산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을 명확히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특별회계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2) 주요 내용

- 특별회계를 위한 문화자산을 국가보유 문화재, 정부미술품, 국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문화·여가시설 등으로 규정
- 문화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자 산특별회계를 설치
- 특별회계의 세입은 1. 국가보유 문화재의 평가금액, 2.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평가금액, 3. 국립미술관 소장품과 정부미술품의 평가금액, 4. 문화·여가시설의 평가금액,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증가금액
- 특별회계의 세출은 세입항목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감소 금액, 세입항목 중 국가 아닌 자에게 매각된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액
- 문화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지역문화자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 · 운영한다.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 3. 광주광역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6.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 7.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 8. 삭제
-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 1.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 4.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 5. 문화전당의 설립·운영, 문화원의 설립·운영 등에 대한 지원
  - 6.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 8.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
  -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 ① 도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8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및 전입금
  - 4. ~ 8. (생략)
- ② 도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2. 도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융자
  - 3.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10조에 따른 예수금, 차관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 화
  - 4. 그 밖에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융자의 이율 및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정부의 보조금
  -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5. 그 밖의 수입금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시행계획에 필요한 비용
  - 2.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 보급에 필요한 비용
  - 3. 건축자산의 보전 · 건축에 대한 지원
  -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 5.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비용

# 40. 문화·여가시설 안전공제사업

현행	개정안 제40조(문화 · 여가시설안전공제사업)
《신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소유인 문화·여가시설의 안 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제사업을 실 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공 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 하여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되,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광부장관이 한다.
	④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여가시설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로 인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2. 문화·여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3.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제조합에 위탁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항제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

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이를 공제사업을 통해 배상 또는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공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문화·여가시설의 안전사고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음
-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되,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광부장관이 함
-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문화·여가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손실을 보상 하는 공제사업
  - 문화·여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제조합에 위탁된 사업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 ②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 41. 문화관광공제

현행	개정안
	제40조(문화관광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문화관광인과 문화·여가시설 에 종사하는 자(이하 "문화관광인 등"이라 한다)는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퇴직 및 업무상 재 해공제에 관한 사업 등 문화관광인 을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문화관광공제회(이 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신설>	③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u> </u>	④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2. 회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 금 지급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 생 사업
	⑤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 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 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할 수 있다.
- ⑧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사업의 수행을 제40조제2 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 (1) 개정 취지

- 문화관광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 혹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문화공제사업"이란 문화관광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함
- 군인공제회나 교직원공제회 등이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2) 주요 내용

- 문화관광인과 문화·여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 및 업무상 재해공제에 관한 사업 등 문화관광인을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문화관광인공제회 설립 가능
- 공제회는 법인이고,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등의 사업을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할 수 있음
-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사업의 수행을 문화·여가시설안전공 제조합에 위탁할 수 있음

## (3) 유사 입법례

#### ※「군인공제회법」

제2조(법인격 및 등기)

-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4조(사업)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2.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 3.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 · 후생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1조(사업)

-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에 대한 급여
  -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42. 공제의 가입

현행	개정안 제42조(공제의 가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관광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 주체 와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문화관광 인등은 해당 보조금 사업의 시작일 로부터 당연히 공제의 가입자가 된 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의 가입자가 된 문화관광인등 외의 문화관광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의 가입 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는 문화관광인등 이 행하는 보조금 사업 완료일의 다음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 (1) 개정 취지

- 공제회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경우에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문화관광인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제가입을 하도록 함
- 의무가입대상인 보조금 사업이 끝나면 공제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함

# (2) 주요 내용

- 공제사업의 안정적 기반확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와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문화관광인이 의무적으로 공제가입하게 하여 공제가 문화관광인의 고용안정 및 퇴직급여지급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규정
-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 문화관광인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공제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하여 공제의 안정적 기반 확보
- 의무가입의 경우 보조금사업 완료일의 다음날에 가입관계가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함

## (3) 유사 입법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삭제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 43. 문화영향평가의 실시

-1-11	-11-101
현행 	개정안 <b>제6장 문화영향평가</b>
	제43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 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 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 "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	1.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ol> <li>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5년 이상</li> <li>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li> </ol>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대상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 등 도시의 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 ·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

- 6.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 화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상 정책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 2. 대상 정책이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 한 경우
  - 3.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 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4.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5.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 하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 혐의하는 경우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 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현행 문화기본법 제5조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정의하고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왔음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문화영향평가 대상

####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예견가 능성을 높이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임
- 시행령 중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 규정과 문화영향평가를 구체화하기 위

한 규정은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침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 시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문화영향평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제2항)
-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1.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 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대상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지역문화진흥법」제15 조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 등 도시의 개발 또는 재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 여 정하는 사업"등으로 명시함
  - 법령 일반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함
  - 투입되는 예산과 사업의 규모,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 되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문화영향평가 대상 제외 사항으로 "1. 대상 정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 정책이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 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을 규정
  - 국민에게 영향력이 극히 미미한 경우는 문화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도 문화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항)
-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제4항)

### (3) 유사 입법례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 ·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정 · 운용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 ·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책 분석·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운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 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2. "환경영향평가" 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 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도시의 개발
  -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 3. 에너지 개발

- 4. 항만의 건설
- 5. 도로의 건설
-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 7. 공항의 건설
- 8. 관광단지의 개발
- 9. 특정지역의 개발
- 10. 체육시설의 설치
-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 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44. 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경우 대상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가서와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에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 정책의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밖에 문화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문화영향평가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절차 규정을 명시함
- 문화영향평가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절차는 시행규칙에 위임함

#### (2) 주요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서와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 정책의 보완·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정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2(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결정 절차)

-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 2. 계획에 대한 환경성 평가의 가능성
  - 3. 계획이 다른 계획 또는 개발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
  - 4.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계획의 적절성
  - 5.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획의 추가 필요성
- ②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사유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다른 계획에서 실시한 전략환경 영향평가와 내용이 중복되는 등 동일한 평가가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계획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협의, 제3항에 따른 실시요청, 제4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45.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의 지정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이하"평가수행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 학
<신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연구와 학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 부터 제6호까지에 대하여 문화영향 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수행기관에 게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 게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 는 경우

3.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평가수행기관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1) 개정 취지

-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 체계적 시행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법률로 기준을 정함
-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문화영향 평가 시행 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규정임

## (2) 주요 내용

-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 지정 및 대행 근거 규정 명시
-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4.「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연구와 학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등으로 명시함
- 문화영향평가수행기관 지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영향평가수행기관의 수준을 담보하고자 함
  - 지정 취소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를 규정함
- 평가수행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3) 유사 입법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2(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단체) 법 제5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 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 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 46. 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ol> <li>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연구</li> </ol>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
〈신설〉	<ol> <li>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 스템 구축 및 운영</li> </ol>
	4.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목 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전담기관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저 최지	<ul><li>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담기관 지정의 기준</li><li>·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i></ul>

#### (1) 개정 취지

- 문화영향평가를 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마련함
- 문화영향평가만을 위한 법정 기구를 마련하는 것보다 전담기관 지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화영향평가수행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주요 내용

- 전담기관의 수행업무를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연구 2. 문화영 향평가 관련 교육·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제45조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등으로 규정함
  -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연구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함
  -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문화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평가수행기관의 전문성, 객관성을 제고함
  -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담기관이 운영하도록 함
  - 제45조5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영향평가 평가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수행기관의 수준을 확보함
- 평가 전담기관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함

## (3) 유사 입법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79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가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분석·보급 등
  - 2.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기준·기술·방법 등의 연구·개발
  - 3.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를 위한 표준 시설·장비 등의 개발·보급
  - 4.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성능평가 대행 업무
  - 5.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기술교류·국제협력 등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 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

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3. 민간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및 규제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부칙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부터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종합계획 및 시 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진흥관련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제1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수립된 행정계획은 이법에 따른 문화진흥관련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 흥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15조의3, 제15조 의4를 삭제한다.

# (1) 개정 취지

○ 부칙에는 주로 법령의 시행일, 기존 규정의 경과규정, 또는 이 법 개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함

# (2) 주요 내용

- 법률의 시행 준비를 위해 하위 법령 준비 등 적정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함
- 이 법 개정 이전의 수립한 문화진흥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함

-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바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고 개정안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까지 존속하도록 하여 이 법에 따른 문화진흥 행정계획의 연속성이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제9조에 따라 문화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제10조에 따라 최초의 종합계획 수립이후부터 6월 이내에 개별 문화법제에 규정된 문화진흥 관련계획이 수립됨.
  - 이 법의 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개별 문화법제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련 행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데 아직 이 법에 따라 개별 문화법제에 규정된 문화진 흥관련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미 수립된 문화관련 행정계획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
  - 부칙에서는 이 법에 따른 문화진흥관련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이미 수립 된 문화관련 행정계획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여 법해석의 혼선을 최소화하 고 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 이 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규정되었던 문화이용권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중복 규정을 방지하고자 함

# Ⅲ.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괄 개정법

# 1. 도입 취지

- 문화기본법과 하위 법률의 법률 위계 정립 및 문화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 상 정립
- 기본법상 종합계획과 개별 법률에 따른 정책의 수립주기 조정

# 2. 주요 내용

-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이 필요한 개별 법률들을 일괄 개정하는 법률 제 정
- 일괄개정 법률을 통해 영역별 기본법의 '목적(제1조)' 조항 및 계획수립 관련 조항을 개정
- 제1조에 "문화기본법에 따라" 명시
- 개별법상 계획수립 조항의 경우, "문화기본법 제10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 다 " 를 명시
- 법률명칭: 문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정책수립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국어기본법 등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3. 법안의 예시

# 문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정책수립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국어기본법 등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정 2021..] [법률 제1111호. . , 일괄개정]

- 제1조(「국어기본법」의 개정) 국어기본법<법률 제16589호>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② 제6조 제1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문화기본법 제9조 의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조(「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법률 제16998호> 일부를 다

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제4조 제2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기본법 제9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3조(「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의 개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법률 제14425호〉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 고 국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 ② 제7조 제1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제9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여가 활성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 와 그 추진방법을 포함한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광기본법」의 개정)** 관광기본법<법률 제16049호>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 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② 제3조 제1항을 "정부는 문화기본법 제9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5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691호)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17조제1항 및 문화다양성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② 제6조 제1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문화기본법 제9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로 한다.

제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57호>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② 제9조 제1항을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을 문화기본법 제9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7조(「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17408호〉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제8조(「국제문화교류진흥법」의 개정) 국제문화교류진흥법〈법률 제15813호〉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② 제5조 제1항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문화기본법 제9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국제 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9조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400호〉의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제10조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2354호〉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한다.
- ② 제6조 제1항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제9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11조(「독서문화진흥법」의 개정) 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14428호〉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② 제5조 제1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제9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12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51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제13조(「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7409호〉의 일부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 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② 제6조 제1항을 "문화재청장은 문화기본법 제9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 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로 한다.
- 제14조(「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7592호〉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② 제6조 제1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기본법 제9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15조(「저작권법」의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7592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제16조(「예술인복지법」의 개정) 예술인복지법 〈법률 제16998호〉를 다음 각 항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를 "이 법은 문화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 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② 제4조의2 제1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기본법 제9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5장 문화기본법 전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권리 보장 과 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삭제 :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다.

###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 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 록 할 것
-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화의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 다.

- 1.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권을 증진할 것
- 2. 사회구성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의 가치를 존 중하며 문화의 역동성을 높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
- 3. 개인이 문화적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며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며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 4. 사회구성원이 적절한 휴식을 보장받고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루며 이를 통해 문 화적 참여와 향유를 활성화함으로써 행복 한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여 문화의 가치가 확산되도록 할 것
- 5. 우리 사회의 지역문화가 균형있게 발전 하고 재외국민 공동체의 문화역량을 증진 하여 인류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 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 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 1.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 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 를 말한다.
- 2. "문화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 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적 표 현을 하며, 문화역량을 향상시킬 권리
- 나. 문화적 표현활동,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향유 등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 다. 문화정책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문화서비스를 받을 권리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여가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 3. "문화역량"이란 문화현상을 이해하거 나 해석하고 수용하며 소통하는 등의 문 해력, 타인의 문화적 표현에 대한 공감 능력,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 술과 문화 창조의 잠재력 등을 말한다.
- 4. "문화정책"이란 문화예술진홍과 교육, 문화산업, 언어문화, 문화·여가시설, 여가활성화, 독서문화, 인문정신문화, 문화복지, 전통문화, 지역문화, 문화교류, 체육·관광, 미디어 등의 영역에서 문화의 가치를 우리사회에 확산하고 문화권을 증진하며 문화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5. "문화보장"이란 사회적 환경 변화 및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제도와 이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공공부조, 문화서

비스 등을 말한다.

- 6. "문화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 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 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 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문화권을 최소한으 로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보장 제도를 말한다.
- 7. "문화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문화를 향유할 능력이 없거나 향유하기 어려운 국민의 최저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8. "문화서비스"란 문화역량을 향상시키 거나 문화를 향유하기 위하여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민간부문으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사회구성원들에게 문화복지, 문화· 여가시설 제공,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진 흥 등의 분야에서 문화권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의 문화생활의 질을 향상되도록 지 워하는 제도를 말한다.
- 9. "문화이용권"이란 특정한 생애주기에 있는 국민, 문화소외계층 또는 재난·위기상황에 있는 국민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관광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10. "문화자원"이란 역사적·예술적·교육적·관 광적 가치가 큰 문화원형, 전통문화, 문화 유산, 예술작품, 문화상품, 문화콘텐츠, 문 화데이터, 문화산업, 문화·여가시설, 관광 자원, 역사자료, 영상 등 유·무형의 인간 활동의 산물을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4조(국민의 권리 등)

- ① 모든 사회구성원은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적 표현을 하며, 문화역량을 향상시킬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사회구성원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

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향유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모든 국민은 문화정책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④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동등한 접근을 보장받는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 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 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 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 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 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 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 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국민의 역할 등)

- ①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다양성과 타인의 문화표현을 존중하며, 우리 사회의 문화역 량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모든 국민은 문화권의 행사를 통해 문화 의 가치가 사회생활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 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 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문화의 가치 확산

제8조(문화의 가치 확산의 원칙)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정 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사회구성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 2. 문화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서비스를 단 계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하여 차별 없는 문화보장이 증진되도록 할 것
- 3.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되, 미래세대 에게 문화유산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
- 4. 문화서비스의 제공과 문화역량의 향상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되, 지역 간의 차별 없이 균형적인 문화발전이 이루어지게 할 것
- 5. 우리 문화의 가치 확산이 인류문화의 보 편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6. 남북 간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 사회의 문화 정체성이 형성되도록 할 것

####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제9조(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 ① 국가는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 에 관한 사항
  -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 한 사항
  -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 용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문화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영역의 문화적 가치의 확산에 관한 계획을 제출받아야 한다.
-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 2.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문화권의 증진에 관한 사항
- 4.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여가생활 보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5. 직장문화, 시민문화, 안전문화 등 중앙행 정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적 가치 확산 정 책에 관한 사항
- 6.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와 관련한 문화정 책에 관한 사항
- 7. 문화보장과 문화서비스의 확대, 문화안전 망 구축 등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 8.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 한 사항
- 9.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 에 관한 사항
- 10.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 한 사항
- 11.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 에 관한 사항
- 12. 그밖에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그밖에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문화진흥 관련계획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문화진흥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의 수립주기는 이 법의 시행이후 최초의 종합계획 수립 시기로부터 기산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진흥 관련 계획은 종합 계획 수립 이후 6월내에 수립한다.

### 제8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 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2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역 종합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 건을 고려하여 5년 마다 시·도 문화진 홍종합계획(이하 "시·도 종합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5년 마다 시·군·구 문화진흥종합계획(이하 "시·군·구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가 시·도 종합계획을 수립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 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진흥 관련 계획에 따른 지역계

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도종합계획 또는 시·군·구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종합계획 또는 시·군·구 종합계 획 및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시·도 종합계획 또는 제2 항에 따른 시·군·구 종합계획의 수 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로 정한다.

### 제14조(국가문화전략회의의 설치)

- ① 문화의 가치 확산 및 문화진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문화전략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문 화진흥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문화진흥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에 관 한 사항
  - 4. 그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신설〉

-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 통부장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국무조정 실장,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 2. 문화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회의의 간사로 한다.
- ⑤ 간사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⑥ 회의는 문화의 가치 확산 및 문화진흥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① 그 밖에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지역문화전략회의의 설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의 가치 확산 및 지역문화진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 화전략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시·도 종합계획 또는 시·군·구 종 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문화진흥사 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3. 지역의 문화진흥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의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공무원 또는 의장이 위촉하는 사 람이 된다.
- ④ 그밖에 지역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⑤ 시·도지사가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의2제1항에 따라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

회를 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 전략회의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16조(문화진흥 재정추계) 국가는 문화정 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문화 진흥 재정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문화역량)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의 문화역량 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권의 증진과 문화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 축, 휴일의 확보 등 사회구성원의 여가를 보장하고 체육·관광의 진흥 등을 통한 여 가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역량강화를 위해 독서문화와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여가활성화, 독서문화와 인문정신문화 진흥, 문화예술 교육, 문화예술 후원에 관하여 따로 법률 로 정한다.

###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 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 1. 문화유산 · 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 3. 문화예술의 진흥
- 4. 문화산업의 진흥
-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 6. 문화복지의 증진
- 7. 여가문화의 활성화
-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 제18조(문화교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 확산 과 우리사회의 문화역량 제고를 위하여 문 화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나라와의 문 화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문화 분야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한 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 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국제 및 남북한 문화교류 관련 정 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제문화교류 및 남북한 문화협력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9조(언어문화진흥)			
〈신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알기 쉬운 한국 어를 사용하여 국민소통을 확대하기 위하 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수어, 점자, 외국어 등 다양한 방식의 언어정책을 통해 언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보급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언어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전통문화와 지역문화진흥)			
〈신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와 문화 유산을 계승 및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문화격 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와 문화 유산의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역 문화 인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정책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 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의 보전·활용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제21조(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하며, 문화상품 및 콘텐츠의 제작·개발· 유통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 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자의 권리 보 장과 창작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보장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복지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를 통한 문화의 가치 확산과 미디어 영역에서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⑤ 문화예술의 진흥, 예술인복지,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저작권의 보장에 관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3장 문화보장과 문화서비스 제22조(문화보장의 원칙)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보장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적용하 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보장의 수준 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며, 문화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문화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보장 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 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며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 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보 장제도간의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 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보장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 계, 문화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 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

	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여 문화서비스 제공이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안전망의 구축·운영)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 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생애 주기 동안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문화안전망을 구축하여 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향유를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또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이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화안전망의 구축·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안전망의 효 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문화공공부조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환경 변화 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문화소 외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보 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문화적 삶을 질을 확보하고 자립하는데 필요한 문 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공공부조사 업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 행하여야 한다.
	③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을 위한 문화공공부조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제25조(문화서비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문화 권 보장과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 문 화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서비스 보장 이 문화공공부조 및 문화안전망과 효과적 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서비스가 차 별 없이 제공되며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 할 수 있고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 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맞춰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문 화서비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서 비스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고 문 화서비스의 단계적 확대 정책을 시행하여 야 한다.
- ⑥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문화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 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 제26조(문화이용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나 지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 또는 재난이나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 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그밖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 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민간의 참여와 협력)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자원봉사, 후원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 2. 문화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 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 업
- 3. 그 밖에 문화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 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 제4장 문화진흥 기반의 조성 제28조(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진흥, 문화보 장, 문화서비스 제공, 문화·여가시설 운영 등에 관한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 분야의 직종 또는 업종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9조(국립문화인재개발원)

- ① 다음 각호의 문화 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문 화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 다)을 둔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 관련 특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문화진흥업무를 위한 공공기관 임직원
- 3. 문화·여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 4. 제28조제1항의 문화전문인력
- ② 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항 각호의 문화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2. 문화진흥을 위한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 3. 문화인력 개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인재개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문화진흥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 ④ 인재개발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립 문화·여가시설의 공무원과 문화진흥업무를 위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연·출자기관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인재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⑥ 그밖에 인재개발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 연 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 여 문화정책의 조사 · 연구와 개발을 장려 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 사 · 연구 · 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 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 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 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 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 • 연구
-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 사 · 연구
-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
-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

### 제30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 발)

- ① 국가는 문화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회구성원의 문화생활에 관련한 실태조사 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문화통계를 개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 다.
- ② 국가는 문화기술 연구·개발과 그 성과 의 확산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1조(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 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 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 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 연구
  -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 • 연구
  -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 사 · 연구
  -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
  -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

보 · 통계의 생산 · 분석 · 서비스

- 9. 조사 · 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 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하지 못한다.

보 · 통계의 생산 · 분석 · 서비스

- 9. 조사 · 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 ⟨삭제⟩

### 제12조(문화행사)

-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문화의 달 · 날)

- ① 사회구성원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 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신설〉

### 제33조(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자원이 발굴 되거나 활용되어 문화역량 증진과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문화자원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신설>

### 제34조(문화경관의 연계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 확산과 문화진흥을 위해 특정 지역의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관광자원·주민의 생활상 등을 문화경관으로 연계·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1항에 따른 문화경관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제35조(문화·여가시설의 조성·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조성한 문 화·여가시설은 문화권 보장을 위하여 차 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문화 · 여 가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역량 증진을 〈신설〉 위해 문화 · 여가 · 체육 · 관광 등을 위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문화 · 여가시 설단지를 조성·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문화향유와 체험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문화 · 여기시설의 범위, 제2항의 민간 문화 · 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제3 항의 문화 · 여가시설단지의 조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문화정보화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보화를 통 한 문화권 보장과 문화의 가치 확산 및 문 화진흥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 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정책, 문화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 계, 문화보장, 문화향유, 문화 여가시설, 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 문화 프로그램 등의 관련 정보를 데이터 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 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통합 · 연계하여 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 처리·기록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 영할 수 있다. 축 · 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정보시 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 영할 수 있다.

## 〈신설〉

### 제37조(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

- ① 문화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문화 진흥 업무의 지능화·고도화 기반의 마련 을 위하여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이 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정부는 정보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법제도·기술의 조 사·연구·개발
  - 2. 문화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지원
  - 3. 문화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통계관리
  - 4. 문화데이터의 수집·관리·융합 기반 조성
  - 5. 제36조제2항에 따른 문화정보시스템 구 축·운영 지원
  - 6. 문화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 7. 문화정보화 관련 교류 · 협력 사업
  - 8. 그 밖에 정보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사업
- ⑥ 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장 문화재정기반과 공제사업 제38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 성과 후원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 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문화자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신설〉	① 국가는 자산적 가치가 있는 국가보유 문화재, 정부미술품, 국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문화·여가시설 등의 문화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자산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평가금 액과 같다.
	1. 국가보유 문화재
	2. 국립박물관 소장품
	3. 국립미술관 소장품과 정부미술품
	4. 문화·여가시설
	5.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증가금 액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li>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감소 금액</li> </ol>
	<ol> <li>국가 아닌 자에게 매각된 제3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액</li> </ol>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전 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문화자산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 치·운용할 수 있다.
	제40조(문화 · 여가시설안전공제사업)
<신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문화·여
	가시설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 (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되,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광부장 관이 한다. ④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 · 여가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이용자 및 종사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2. 문화·여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정책연구사업 3.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제조합에 위탁 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항제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⑥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문화관광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문 화관광인과 문화 · 여가시설에 종사하는 자 (이하 "문화관광인등"이라 한다)는 고용안 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 및 업무상 재해공제에 관한 사업 등 문화관광인을 위 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고자 하 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 아 문화관광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공제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2. 회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 3.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시설의 운영
- 4.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
- ⑤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 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⑥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 금을 낼 의무와 공제회로부터 급여나 그 밖의 이익 또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 진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회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할 수 있다.
- ⑧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사업의 수행을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2조(공제의 가입)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관광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을 하는 경 우에 그 사업 주체와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문화관광인등은 해당 보조금 사업의 시작 일로부터 당연히 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의 가입자가 된 문화관광인등 외의 문화관광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공제는 문화관광인등이 행하는 보조금 사업 완료일의 다음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 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 제6장 문화영향평가 제43조(문화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가지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 다.
  - 1.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 칙을 말한다)
  -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5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중앙 투자심사대상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 업,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사업 등 도시의 개발 또는 재 생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체육·관 광 관련 시설 건립사업
  - 6.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대상 정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 2. 대상 정책이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 3.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 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 유과과부자과과 혐의하 사업

- 4.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 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5.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 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로 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문화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44조(문화영향평가의 절차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대상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서와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대상 정책의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

- 청을 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의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그밖에 문화영향평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 한다.

### 제45조(문화영향평가수행기관의 지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 관 또는 단체 등을 문화영향평가 수행기 관(이하 "평가수행기관"이라 한다)으 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공립 연구기관
  -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으로서 문화 분야의 정책연구와 학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평가수행기관에게 문화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수행기관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3.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수행기관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46조(문화영향평가전담기관의 지정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에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 영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 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 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 다. 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 · 연구 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훈련 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4.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수행 기관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담기관 지정의 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삭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제2조(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부터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한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다.

제3조(문화진흥관련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제10조제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수립된 행정계획은 이 법에 따른 문화진
흥관련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 참고문헌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5, 422쪽.

국가인권위원회,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김기곤, "한국사회의 문화권 구성과 제도화", 민주주의와 인권, 제11권제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김수갑, 문화국가론, 충북대출판부, 2012.

박영도, 입법학입문, 한국법제연구원, 2008

성낙인,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적 기본권", 유럽헌법연구 제30호, 유럽헌법연구, 2019.

이영욱, "문화헌장 제정의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록, 2005.

정광렬 외, "문화국가를 위한 헌법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정만희, 헌법강의, 동아대출판부, 2016.

### 문화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문화분야 법제 연구

발행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 수행기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 연구원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원 김정현 (전북대학교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보조 연구원 이수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인 쇄 일 2021년 3월

**발 행 일** 2021년 3월



